

## 경북 상주·예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 【결정사안】

1949년 3월부터 1950년 10월까지 경북 상주·예천지역에 거주하던 민간인 7명이 좌익 협조 혐의 또는 부역혐의 등으로 상주·예천경찰서 소속 경찰 등에 연행되어 상주시 내서면 낙서리, 예천군 개포면 금리 등지에서 군·경에게 불법적으로 희생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한 사례.

### 【결정요지】

1. 한국전쟁 발발을 전후한 1949년 3월부터 1950년 10월까지 경북 상주·예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희생자들은 상주 및 예천지역 관할 경찰서 경찰과 국군에 의해 연행된 후 상주지역의 내서면 낙서리 야산, 상주읍 계산리(현 계산동)와 예천지역의 용궁면 월오리, 개포면 금동(현 금리) 등에서 희생되었다.

2. 조사 결과, 경북 상주·예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희생자는 총 7명이다. 이번 조사로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경북 상주지역에 김○기(金○己, 2다-2724), 전○옥(全○玉, 2다-2724), 김○규(金○圭, 2다-16643) 등 3명, 경북 예천지역에 박○대(朴○大, 2다-300-1), 안○목(安○睦, 2다-1041), 안○진(安○鎭, 2다-1041), 박○성(朴○成, 2다-7864) 등 4명이다.

3. 이 사건의 희생자들은 남성이 대다수이고, 직업적으로는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비무장 민간인이었다.

4. 이 사건의 가해 주체는 상주·예천경찰서 소속의 경찰과 제1사단 제12연대 등 국군이다. 따라서 민간인 불법 살해의 최종적인 책임은 이들 군·경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국가에 귀속된다.

5. 이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일차적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군과 경찰이 관할지역의 비무장·무저항 민간인들을 불법 살해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다. 군·경이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한 채 범죄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민간인들을 적법절차 없이 살해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6.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등 후속 조치, 역사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한다.

**【전 문】**

**【사 건】** 2다-2724 등 5건, 경북 상주·예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신청인】** 김○분 등 5명

**【결정일】** 2024. 7. 9.

**【주 문】**

위 사건에 대하여 이유와 같이 진실규명으로 결정한다.

**【이 유】**

## - 목 차 -

|                                    |     |
|------------------------------------|-----|
| I. 조사 개요 .....                     | 128 |
| 1. 사건 개요 .....                     | 128 |
| 가. 신청 접수와 처리 .....                 | 128 |
| 나. 신청 내용 .....                     | 129 |
| 2. 국가 기관의 기존 조사 .....              | 129 |
| 가. 1960년 제4대 국회 .....              | 129 |
| 나. 2000년 경상북도의회 .....              | 130 |
| 다. 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 | 131 |
| 3. 조사의 근거와 목적 .....                | 131 |
| 4. 규명 과제 .....                     | 131 |
| 5. 조사의 방법 .....                    | 132 |
| 가. 기록 조사 .....                     | 132 |
| 나. 진술 조사 .....                     | 137 |
| 다. 현장 조사 .....                     | 137 |
| II. 조사 결과 .....                    | 139 |
| 1. 사건 배경 .....                     | 139 |
| 가. 해방 후 경북 상주·예천지역의 상황 .....       | 139 |
| 1) 상주군(현 상주시) .....                | 139 |
| 2) 예천군 .....                       | 140 |
| 2. 사건 경위 .....                     | 142 |
| 가. 희생 경위 .....                     | 142 |
| 1) 상주군(현 상주시) .....                | 142 |
| 가) 내서면 연원리(현 연원동) .....            | 142 |
| 나) 상주읍 죽전리(현 죽전동) .....            | 144 |
| 2) 예천군 .....                       | 148 |
| 가) 용궁면 월오리 .....                   | 148 |
| 나) 개포면 금동(현 금리) .....              | 152 |
| 나. 희생 장소 .....                     | 154 |
| 3. 사건 조사 결과 .....                  | 155 |
| 가. 희생자 수와 신원 .....                 | 155 |
| 나. 희생자의 특징 .....                   | 157 |
| 다. 가해 주체 .....                     | 158 |
| 라. 가해의 위법성 여부 .....                | 159 |
| 마. 유족의 피해 .....                    | 160 |
| III. 결론 및 권고 사항 .....              | 161 |
| 1. 결론 .....                        | 161 |
| 2. 권고 사항 .....                     | 162 |

## - 표 목차 -

|                                         |     |
|-----------------------------------------|-----|
| 〈표 1〉 진실규명 신청 상황 .....                  | 128 |
| 〈표 2〉 김○규의 자녀 통지표의 보호자 기재 사항 .....      | 147 |
| 〈표 3〉 희생자 신원과 확인 근거 .....               | 156 |
| 〈표 4〉 경북 상주군·예천군 희생자 거주지(읍면동)별 분포 ..... | 157 |
| 〈표 5〉 희생자 성별 분포 .....                   | 157 |
| 〈표 6〉 희생자 연령별 분포 .....                  | 157 |
| 〈표 7〉 희생자 직업별 분포 .....                  | 157 |

## - 사진 목차 -

|                                       |     |
|---------------------------------------|-----|
| 〈사진 1〉 『제4대 국회보고서』 중 「양민피살자신고서」 ..... | 134 |
| 〈사진 2〉 진실규명대상자 김○규가 수업하는 모습 .....     | 146 |

## - 지도 목차 -

|                                           |     |
|-------------------------------------------|-----|
| 〈지도 1〉 경북 상주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희생 장소 ..... | 154 |
| 〈지도 2〉 경북 예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희생 장소 ..... | 155 |

## - 붙임 목차 -

|                                       |     |
|---------------------------------------|-----|
| 〈붙임(표) 1〉 신청인 주요 진술 내용 .....          | 163 |
| 〈붙임(표) 2〉 피해 관련 참고인 주요 진술 내용 .....    | 166 |
| 〈붙임(표) 3〉 제4대 국회 「양민피살자신고서」 정리표 ..... | 172 |
| 〈붙임(표) 4〉 희생 현장 위치 및 사진 .....         | 173 |

## I. 조사 개요

### 1. 사건 개요

#### 가. 신청 접수와 처리

신청인 김○분(2다-2724) 등 5명은 2021년 3월 26일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에 한국전쟁 발발을 전후한 시기에 경북 상주·예천지역에 거주하던 진실규명대상자들이 군경의 빨치산 토벌작전과 좌익 및 부역혐의자 색출·검거과정에서 ‘빨치산’ 혹은 ‘부역자’, ‘좌익협력자’라는 혐의로 연행된 후 희생되었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신청건수 5건, 진실규명대상자 7명).

진실화해위원회는 위 신청사건들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제10차(2021. 7. 15.), 제11차(2021. 8. 12.), 제25차(2021. 11. 9.), 제48차(2023. 1. 31.), 제49차(2023. 1. 10.) 제1소위원회에서 조사개시를 의결하고, 제14차(2021. 8. 12.), 제15차(2021. 8. 26.), 제28차(2022. 3. 22.), 제51차(2023. 2. 7.), 제54차(2023. 5. 10.) 위원회에 보고하여 ‘경북 상주·예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조사개시 결정하였다. 진실규명 신청 상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진실규명 신청 상황

| 연번                       | 사건<br>번호<br>(2다-) | 접수<br>일자    | 신청인<br>(한자명) | 진실규명대상자      |    |             |          |                     |             |            |                | 비고          |
|--------------------------|-------------------|-------------|--------------|--------------|----|-------------|----------|---------------------|-------------|------------|----------------|-------------|
|                          |                   |             |              | 성명<br>(한자명)  | 성별 | 신청인과의<br>관계 | 출생<br>연도 | 신청서<br>사망일          | 제적등본<br>사망일 | 당시<br>거주지  | 사건<br>발생<br>장소 |             |
| 상주시(신청건수 2건, 진실규명대상자 3명) |                   |             |              |              |    |             |          |                     |             |            |                |             |
| 1                        | 2724              | 2021.3.26.  | 김○분<br>(金○分) | 김○기<br>(金○己) | 남  | 아버지         | 1897     | 1950.8.3.           | 1950.8.3.   | 내서면<br>연원리 | 내서면<br>낙서리     | 현 연원동       |
|                          |                   |             |              | 전○옥<br>(全○玉) | 여  | 어머니         | 1910     | 1950.8.3.           | 1950.8.3.   | 내서면<br>연원리 | 내서면<br>낙서리     | 현 연원동       |
| 2                        | 16643             | 2022.11.28. | 김○태<br>(金○泰) | 김○규<br>(金○圭) | 남  | 아버지         | 1921     | 1950.9.28.          | 1950.8.23.  | 상주읍<br>죽전리 | 공성면<br>옥산리     | 현 죽전동       |
| 예천군(신청건수 3건, 진실규명대상자 4명) |                   |             |              |              |    |             |          |                     |             |            |                |             |
| 3                        | 300-1             | 2020.12.24. | 박○봉<br>(朴○鳳) | 박○대<br>(朴○大) | 남  | 삼촌          | 1921     | 1950년경<br>(6·25 전후) | 1950.7.20.  | 용궁면<br>월오리 | 용궁면<br>월오리     |             |
| 4                        | 1041              | 2021.1.19.  | 안○진<br>(安○鎭) | 안○목<br>(安○睦) | 남  | 아버지         | 1892     | 1949.3.1.           | 1952.6.26.  | 용궁면<br>월오리 | 용궁면<br>월오리     |             |
|                          |                   |             |              | 안○진<br>(安○鎭) | 남  | 형           | 1932     | 1949.3.1.           | 1952.7.1.   | 용궁면<br>월오리 | 용궁면<br>월오리     |             |
| 5                        | 7864              | 2021.8.27.  | 박○호<br>(朴○鎬) | 박○성<br>(朴○成) | 남  | 할아버지        | 1907     | 1949.7.13.<br>(음)   | 1973.4.28.  | 개포면<br>금동  | 개포면<br>금동      | 현 개포면<br>금리 |

## 나. 신청 내용

신청인 김○분 등 5명은 경북 상주·예천지역에 거주하던 진실규명대상자들이 한국전쟁 발발 전 후 시기인 1949년 3월부터 1950년 9월까지 좌익 및 인민군에 협조하는 등의 혐의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에 연행된 후 살해당하거나 행방불명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신청인들은 진실규명대상자들이 억울하게 희생된 후 가장을 잃은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으며, 특히 유가족에게 가해진 사회적 비난과 낙인으로 인해 정신적 트라우마는 물론 교육, 취업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과 감시를 받으며 살아야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이에 신청인 김○분 등 5명은 진실화해위원회에 ‘경북 상주·예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에 사망일시와 장소, 사망 경위를 포함한 진실규명을 요구하였다. 또한, 국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희생자의 명예회복,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유가족의 피해에 대한 배상 등을 요구하였다.

## 2. 국가 기관의 기존 조사

### 가. 1960년 제4대 국회

1960년 4·19 이후 전국 각지에서 한국전쟁 전후 발생하였던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한 제보를 바탕으로 언론 보도가 속출하자, 피해지역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제4대 국회는 1960년 5월 23일(국회 제35회 제19차 본회의)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피해지역을 경남, 경북, 전남으로 나누어 자유당, 민주당, 무소속 의원 각 3명으로 편성된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해 5월 27일 조사특위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였다.<sup>1)</sup>

조사특위는 현장을 조사하고 「양민피살자신고서」, 유족들의 증언에 대한 속기록, 행정부에 대한 건의안<sup>2)</sup>을 포함한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대한민국국회, 1960)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조사특위의 조사 결과는 1960년 6월 21일 제4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서 확인되는 경북 상주·예천지역의 「양민피살자신고서」는 총 546건이다.<sup>3)</sup>

1) 제19차 본회의 결의에 따라 조사특위는 경남반·경북반·전남반 등 3개 반으로 구성되었다. 조사특위의 편성은 위원장 최천을 중심으로 경남반: 최천·조일재·박상길, 경북반: 윤용구·주병환·임차주, 전남반: 유옥우·이사형·박병배 등으로 구성되었고, 조사 시기는 1960년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로 했다.

2) 조사특위가 제출한 행정부에 대한 건의안에는 ‘첫째, 조사한 지역뿐 아니라 사건조사를 위한 군·경·검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악질적 관련자 및 피해자와 피해 상황을 조속히 조사하고, 둘째, 관련자의 엄중한 처단과 피해자에 대한 피해제도를 설정하기 위하여 기존 법률에 따른 일사부재리 원칙이나 시효의 저촉 여부와 관계없이 「양민학살사건처리특별조치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실태보고서』, 한울아카데미, 2005, 695-696쪽.

3)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서 확인되는 「양민피살자신고서」는 상주지역 363건(중북 제외 시 360건), 예천지역 183건이다. 대한민국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 1960.

## 나. 2000년 경상북도의회

1999년 11월 10일(경상북도의회 제141회 제2차 본회의) 경상북도의회는 한국전쟁 전후 경상북도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지역 의원을 포함한 도의원 15명으로 구성된 ‘양민학살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해 12월 16일 경북도의회양민학살진상규명특별위원회(이하 경북도의회양민특위)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였다.<sup>4)</sup>

경북도의회양민특위는 신고가 접수된 지역을 중심으로 2000년 1월 19일부터 2000년 5월 2일까지 총 9차에 걸쳐 사건 현장을 조사<sup>5)</sup>하고 유족들의 증언을 담은 속기록, 행정부에 대한 건의안<sup>6)</sup>을 포함한 『양민학살진상규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경북도의회양민특위가 조사할 때, 상주지역에서는 전화와 서신을 통해 3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다. 접수된 3건은 국군과 경찰에 의한 피해 2건, 미군 폭격기에 의한 피해 1건으로 사망 인원은 8명이었다. 당시 접수된 사건 중에는 경북 상주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추정되는 사건<sup>7)</sup>도 있었다.

경북도의회양민특위가 조사할 때, 예천지역에서는 서신 및 방문을 통해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2건 접수되었고, 예천군 자체 조사도 시행하였다. 국군과 경찰에 의한 피해 1건,<sup>8)</sup> 미군 폭격기에 의한 피해 2건의 피해 인원은 사망 90명, 부상 105명이었고, 재산 피해로 주택 88호가 전소되었다.

경북도의회양민특위의 현장 조사는 예천군 미군 폭격기에 의한 피해 지역인 예천군 보문면 산성리와 감천면 진평리 현장에서 진행되었고, 상주지역에서는 진행되지 않았다.

4) 제2차 본회의 결의에 따라 경북도의회양민특위는 전체위원(1개 반)으로 구성되었다. 경북도의회양민특위의 편성은 위원장 주기돈, 간사 채희영을 중심으로 이상수·김기인·나종택·박경동·이달·김용암·김응규·신영호·이용석·최영욱·주기돈·최희영·윤상주·이태조·현명진 등으로 구성되었고, 조사 시기는 2000년 1월 17일부터 5월 30일까지로 했다.

5) 1차-문경시 산북면, 예천군 보문면, 예천군 감천면, 2차-의성군 금성면, 3차-안동시 북후면, 의성군 가음면, 4차-영양군 영양읍, 영덕군 영덕읍, 영덕군 지품면, 울진군 근남면, 5차-포항시 흥해읍, 포항시 청하면, 포항시 송라면, 포항시 여남동, 포항시 동해면, 6차-고령군 성산면, 고령군 우곡면, 7차-김천시 남면, 김천시 감천면, 칠곡군 왜관읍, 8차-문경시 문경읍, 9차-안동시 풍산읍, 청송군 안덕면. 양민학살진상규명특별위원회, 『양민학살진상규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경상북도의회, 2000, 46-57쪽.

6) 경북도의회양민특위가 제출한 정부에서 조치할 사항에는 ‘국민보도연맹, 재소자 등 당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자행된 총살이나 처형이라 할지라도 사실 여부 확인이나 재판절차 등이 생략된 채 자행됨에 따른 유가족들의 고통을 감안하여 6·25 전후 자행된 일반 양민학살사건과 그동안 연좌제 등으로 피해를 당한 유족들에게 국민화합 차원에서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와 명예 회복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양민학살진상규명특별위원회, 『양민학살진상규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경상북도의회, 2000, 478쪽.

7) 사건 개요: 상주시 모동면에서 1950년경 부친이 피난갔다 돌아온 후 사상과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국군에 의해 부친 등 한마을 사람 5명이 피살됨. 양민학살진상규명특별위원회, 『양민학살진상규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경상북도의회, 2000, 28쪽.

8) 사건 개요: 6·25 직전 불순분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부친 등 10명 이상이 총살당함. 양민학살진상규명특별위원회, 『양민학살진상규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경상북도의회, 2000, 35쪽.

## 다. 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sup>9)</sup>의 진실규명

2010년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 당시인 1950년 9월 25~26일 상주군 공성면 산현리와 청리면 가천리의 주민들이 복진하는 국군 제1사단 제12연대에 의해 연행된 후 부역혐의로 총살된 사실을 규명하는 등 ‘경북 상주지역 및 예천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의 희생자 총 57명의 신원을 확인했다.<sup>10)</sup>

## 3. 조사의 근거와 목적

진실화해위원회는 ‘경북 상주·예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이 「과거사정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sup>11)</sup>의 진실규명을 통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한다.<sup>12)</sup>

## 4. 규명 과제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조사를 통해 ‘경북 상주·예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발생 배경 및 진실규명대상자들의 희생 경위, 희생자의 수와 신원, 가해 주체, 가해의 위법성 여부, 유족의 피해 사실 등을 밝히고자 한다.

9) 2005년 5월 31일 제정된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같은 해 12월 1일 출범하여 2010년 12월 31일에 활동을 종료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0년 6월 9일 「과거사정리법」 일부개정으로 같은 해 12월 10일 출범한 진실화해위원회와 구분하여, ‘1기 진실화해위원회’로 약칭한다.

10) 1기 진실화해위원회, 「구미·김천·상주·영덕·포항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7권』, 2010; 1기 진실화해위원회, 「예천·문경 민간인 희생 사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4권』, 2010.

11) 이하에서 ‘이 사건’은 ‘경북 상주·예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을 지칭한다.

12) 「과거사정리법」 제1조.

## 5. 조사의 방법

### 가. 기록 조사

#### 1) 1기 진실화해위원회 기록

##### 가) 1기 경북 상주·예천지역 관련 조사보고서 및 사건기록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의 조사를 위해 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생산한 한국전쟁 전후 경북 상주·예천지역 관련 사건 조사보고서를 검토하고 조사보고서의 일부 사건기록을 활용하였다. 검토된 조사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 1기 진실화해위원회, 「경북지역 적대세력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제2권』, 2010.
- 1기 진실화해위원회, 「구미·김천·상주·영덕·포항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4권』, 2010.
- 1기 진실화해위원회, 「예천·문경 민간인 희생 사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4권』, 2010.
- 1기 진실화해위원회, 「대구·경북(I-1) 국민보도연맹 사건 -예천·문경·상주·영주-」,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제5권』, 2010.
- 1기 진실화해위원회, 「대구·경북지역 형무소재소자 희생 사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6권』, 2010.
- 1기 진실화해위원회, 「국민보도연맹 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제7권』, 2010.
- 1기 진실화해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 2010.

##### 나) 기초사실조사표(진실화해위원회, 2007, 2008)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2007년, 한국전쟁 전후 전국적으로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조사사업을 진행하였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의 발생 여부, 사건 개요, 희생자 규모, 가해 주체, 희생 유형 등에 대해 사건 관련자, 목격자 등의 증언을 채록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관련 기록을 파악·수집하는 것이었다.<sup>13)</sup>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조사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사실조사표』를 작성했다. 당시 작성된 경

13) 1기 진실화해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 I』, 2010, 116~126쪽.

북 상주·예천지역에서 작성된 『기초사실조사표』에는 총 546건<sup>14)</sup>에 대해 가해자, 희생자의 이름, 나이, 직업, 거주지, 사건 내용, 피해 일시, 희생 장소, 희생 유형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 조사에서는 『기초사실조사표』를 경북 상주·예천지역의 피해 상황과 진실규명대상자의 희생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활용했다.

#### 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관련 피해자현황조사 연구용역 사업(2007)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지역단위에서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의 피해 규모 및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연구책임기관을 선정해 각 지역에 대한 연구용역 사업을 진행했다.<sup>15)</sup> 이 용역 사업의 일환으로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이 경북 예천지역에 대한 연구용역사업을 진행했고 그 결과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관련 피해자현황조사 용역사업 결과보고서(경상북도 예천군)』(이하 ‘『2007 피해자현황조사』’)가 작성되었다.

『2007 피해자현황조사』에는 경북 예천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의 면·리별 사건 유형, 발생 시기, 사건 장소, 가해자, 사건 배경, 사건 개요, 참고자료, 피조사자 등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특히 피해자와 직접적 관계에 있는 가족의 증언을 우선으로 듣고, 유교적 관습에 따라 피해자의 제사를 모시는 아들의 증언에 무게를 두고 청취하고, 피해자의 배우자, 형제, 당시 목격자를 통해 보충하였다. 그 밖에 토박이이면서 오랫동안 마을 일을 보았던 전·현직 이장을 탐문하여 구술 채록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규명대상자의 희생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이 보고서를 활용했다.

#### 2) 제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대한민국국회, 1960)

4·19 직후인 1960년 5월 27일 제4대 국회는 조사특위를 설치하여,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민간인 희생 사건을 조사하였다. 조사특위의 활동 및 조사 결과는 제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이하 『제4대국회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다.<sup>16)</sup>

『제4대국회보고서』에는 1960년 당시 조사특위가 대구·경북지역에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의 유족들로부터 시군별로 접수한 5,000여 장의 「양민피살자신고서」가 포함되어 있다.<sup>17)</sup> 이 「양민피살자신고서」에는 1960년 당시 희생자로 신고된 사람들의 인적 사항, 가해 기관, 피살 시기·

14) 경북 상주 186건, 예천 360건이다.

15) 1기 진실화해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 I』, 2010, 116~126쪽.

16) 『제4대국회보고서』는 총 24권, 약 6,900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4대국회보고서』는 「최종보고서」와 「시군별 보고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군별 보고서」는 권당 200~300매가량의 「양민피살자신고서」와 「연명부」, 「집계표」로 구성되어 있다. 김상숙, 「한국전쟁 전 대구경북지역의 민간인학살사건의 실태와 특징-제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의 기록을 중심으로-」, 『대구사학』 제102집, 대구사학회, 2011, 90쪽.

17) 신고서는 읍·면장 귀하로 작성되어 읍·면의 일부인(日附印)이 찍힌 상태로 접수 일자와 연번이 기재되어 있고, 이후 읍·면장이 상주 군수·예천군수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 군수가 취합·집계한 결과와 함께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공문서이다. 「양민피살자신고서철 [경북 상주] 기록 검토 보고」 (조사3과-2842, 2023. 12. 14.).

장소·경위 등이 기재되어 있다.<sup>18)</sup> 이중 경북 상주지역에서는 363건,<sup>19)</sup> 예천지역에서는 183건의 「양민피살자신고서」가 제출되었다.

「양민피살자신고서」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4·19혁명 직후 작성되었으며, 희생자들의 본적과 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과 피살 시기, 피살 경위 및 가해 주체 등이 비교적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양민피살자신고서」를 비롯한 『제4대국회보고서』를 이 사건 희생자의 시기·경위·장소와 희생자 신원 등을 규명하는 데 활용하였다.<sup>20)</sup>

이 사건의 제4대 국회 「양민피살자신고서」 정리표는 <붙임(표) 3>과 같다.

<사진 1> 『제4대 국회보고서』 중 「양민피살자신고서」<sup>21)</sup>

| 被殺者의 姓名 |   | 被殺者의 本籍 |   | 被殺者의 生年월일 |    | 被殺者의 死年월일 |    | 被殺者의 死時 |    | 被殺者의 死所 |   | 被殺者의 死因 |    | 被殺者의 死後 |    |
|---------|---|---------|---|-----------|----|-----------|----|---------|----|---------|---|---------|----|---------|----|
| 姓       | 名 | 省       | 縣 | 年         | 月  | 年         | 月  | 時       | 時  | 所       | 所 | 因       | 因  | 後       | 後  |
| 李       | 大 | 京       | 畿 | 1910      | 10 | 1945      | 10 | 10      | 10 | 京       | 畿 | 被殺      | 被殺 | 死後      | 死後 |

85

18) 경북지역의 「양민피살자신고서」에는 해당 지역 시·군은 물론 읍면 단위에 이르기까지 학살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전체 집계 표에는 피학살자를 직업별, 성별, 나이별로 분류했을 뿐만 아니라, 학살 주체가 군인지 경찰인지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김기진, 『끝나지 않은 전쟁 국민보도연맹』, 역사비평사, 2002; 전갑생, 「1960년 국회 '양민학살사건조사특별위원회' 자료 -경남을 중심으로」, 『제노사이드연구』, 한국제노사이드연구회, 2007, 239쪽.

19) 363건 중 3건은 중복으로 확인되어 신고된 피살자는 360명이다. 대한민국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 1960.

20) 「양민피살자신고서」를 비롯한 『제4대국회보고서』의 신뢰성은 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경북지역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국회도서관에 따르면 「양민피살자신고서」는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의 증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법원은 「양민피살자신고서」에 대하여 ‘조사과정에서 이루어진 유족들의 진술과는 별도의 증거가치를 지니는 상당히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2. 선고 2011가합106827)라며 신뢰할만한 자료로 판단했다. 국회도서관(기획담당관실), 「국회도서관, 손글씨로 쓴 한문기록 「양민피살자신고서」 색인(한글찾기) 작성」(보도자료, 2013. 10. 15.).

21) 「양민피살자신고서」, 『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6-10)』, 1960, 85쪽.

### 3) 양민학살진상규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경상북도의회, 2000)

양민학살진상규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2000년 6월 경상북도의회가 피해자 유가족들의 신고 접수 및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거론된 경상북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을 조사한 보고서다. 해당 보고서에 포함된 경북 상주·예천지역 사건은 대부분 미군 관련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경북 상주·예천지역의 추가적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활동결과보고서를 분석, 검토했다.

### 4) 제적등본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규명대상자의 사망에 대한 공적인 기록으로 제적등본을 확인했다. 한국전쟁 시기 상주·예천지역 관공서가 소실되거나 호적업무가 원활하지 않아 진실규명대상자의 사망 직후 사망신고를 한 경우는 드물었다. 일부 유족은 진실규명대상자의 사망일을 기억하여 사망신고를 했다. 이를 통해 진실규명대상자의 희생 시기와 희생 장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 5) 족보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규명대상자의 사망에 대한 기록으로 족보를 확인했다. 제적등본에 실제 사망일이 기록되지 않았더라도 족보에는 실제 사망일이 기재되어 제삿날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규명대상자의 희생시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 6) 학교생활기록부(학적부)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규명대상자의 자녀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적부')를 자녀들이 졸업한 각 학교에 요청·입수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학교생활기록부(학적부) 중 특히 보호자의 성명·주소·직업·관계, 가정환경, 입학·졸업일 등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진실규명대상자들의 희생 여부와 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했다.

### 7) 기타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 조사를 위해 『대공신원기록편람』(치안본부, 1984)<sup>22)</sup>, 『행불자명부』(내무부 치안국 전남청, 1968)<sup>23)</sup>, 『좌익수형기미만기석방자명부』(경상북도 경찰국, 1963)<sup>24)</sup>, 『좌

22) 『대공신원기록편람』은 치안본부가 1984년 생산한 자료로 본적지별 간첩, 귀순자, 납북귀환자, 납북미귀환자, 정보사범 등의 주소, 성명, 특이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23) 『행불자명부』는 내무부치안국이 1968년 생산한 기록이다. 이 명부에는 1960년대 후반까지 행방불명된 인원 2,232명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본적, 주소, 학력, 직업, 죄명, 형기, 출소연월일, 호적소명, 행불 연월일이 기록되어 있다.

24) 『좌익수형기미만기석방자명부』는 경상북도 경찰국이 1963년 생산한 기록이다. 이 명부에는 특조령, 보안법, 조치령,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747명의 본적, 현 주거지, 성명, 생년월일, 죄명, 형기, 석방년월일, 주요 가족명이 기재되어 있다.

익수전향자석방자명부』(경상북도 경찰국, 1962)<sup>25)</sup>, 『좌익미전향자석방자명부』(경상북도 경찰국, 1962)<sup>26)</sup> 등을 검토하였다.

특히 연행 후 행방을 알 수 없는 진실규명대상자의 월북 여부 및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과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해 『월북자명단(공보처 통계국, 1951)』, 『6·25사변 피살자 명부』(공보처 통계국, 1952),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의 「납북인사 DB」<sup>27)</sup>를 검토하였다.

그 밖에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아래 기록을 참고하였다.

- 『경향신문』, 『국제신보』, 『남선경제신문』, 『동아일보』, 『민주중보』, 『영남일보』, 『조선일보』 등 기사
- 대법원, 대구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판결문
- 경북지방경찰청, 『경북경찰발전사』, 2001.
- 경찰청, 「보도연맹원 학살 의혹 사건(한국전쟁 당시)」,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보고서』, 2007.
- 헌병사령부, 『한국헌병사』, 1952.
- 국군보안사령부, 『대공30년사』, 1978.
- 상주시, 『상주시사』 제1권-제5권, 2010.
- 예천군지편찬위원회, 『예천군지 하권: 예천의 문화재』, 2005.
- 육군사관학교 전사학과, 『한국전쟁사』, 1987.
- 헌병사령부, 『한국헌병사』, 1952.
- 금중현, 「통신의 발달과 근·현대 상주우체국의 역사」, 『제15회 상주 근·현대사 학술대회』 자료집, 2020.
- 김기진, 『끝나지 않은 전쟁 국민보도연맹』, 역사비평사, 2002.
- 김상숙, 「한국전쟁 전 대구경북지역의 민간인학살사건의 실태와 특징-제4대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의 기록을 중심으로-」, 『대구사학』 제102집, 대구사학회, 2011.
- 김상호, 「상주지역 한국전쟁의 고찰」, 『상주문화』 제23호, 2013, 322-362쪽.

25) 『좌익수전향자석방자명부』는 경상북도 경찰국이 1962년 생산한 기록이다. 이 명부에는 좌익사범 105명의 본적, 현 주거지, 성명, 생년월일, 죄명, 형기, 석방년월일이 기재되어 있다.

26) 『좌익미전향자석방자명부』는 경상북도 경찰국이 1962년 생산한 기록이다. 이 명부에는 좌익사범 444명의 본적, 현 주거지, 성명, 생년월일, 죄명, 형기, 석방년월일, 요시찰 여부와 분류기호가 기재되어 있다.

27) 납북인사 DB의 인터넷 주소는 [www.kwafu.org/korean/directory.php](http://www.kwafu.org/korean/directory.php) 이며, 해당 DB는 다음의 자료를 포함한다. 『서울특별시 피해자 명부(2,438명)』, 공보처 통계국, 1950; 『6·25사변피랍치자 명부(82,959명)』, 대한민국 정부, 1952; 『6·25동란으로 인한 피랍치자 명부』, 내무부 치안국, 1954; 『실향사민등록자명단(7,034명)』, 대한적십자사, 1956; 『6·25사변피랍치자인사명부(2,316명)』, 6·25사변피랍치인사가족회, 1951.

- 김철수, 『한국전쟁과 화령장전투』, 상주문화원, 2018.
- 노영기,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에 관한 자료 실태와 연구현황」, 『역사와현실』 54호, 한국역사연구회, 2004, 61-89쪽.
- 박종열, 「상주 의용소방대의 탄생과 활약상」, 『상주문화』 제23호, 2013.
- 서중석,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2』, 오월의 봄, 2015.
- 전갑생, 「1960년 국회 ‘양민학살사건조사특별위원회’ 자료 -경남을 중심으로」, 『제노사이드연구』, 한국제노사이드연구회, 2007.

## 나. 진술 조사

### 1) 신청인 진술 조사

진실화해위원회는 2022년 4월 20일부터 2023년 4월 7일까지 신청인 김○분(2다-2724) 등 5명에 대한 신청인 진술 조사를 진행하였다. 신청인의 주요 진술 내용은 <붙임(표) 1>과 같다.

### 2) 피해 관련 참고인 진술 조사

진실화해위원회는 2023년 6월 19일부터 2024년 5월 20일까지 참고인 박○○ 등 피해 관련 참고인 13명<sup>28)</sup>에 대한 진술 조사를 진행하였다. 참고인의 주요 진술 내용은 <붙임(표) 2>와 같다.

## 다. 현장 조사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 『제4대국회보고서』, 「피해자현황조사표」, 『2007 피해자현황조사』 등을 검토해 경북 상주·예천 지역의 주요 희생 현장을 아래와 같이 파악하였다.

### 1) 경북 상주지역 민간인 희생 현장

#### 가) 상주시 내서면 낙서리

#### 나) 상주시 상주읍 계산리(현 계산동)

28) 이 사건의 참고인에는 다른 사건의 신청인인 안○○(2마-17725, 진실규명대상자 안○○; 2마-17728, 진실규명대상자 안○○)가 포함되었다. 신청인 안○○는 1938년생으로 이 사건 당시 예천군 용궁면 월오리의 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시신 수습 상황을 목격한 바 있어 참고인 진술을 청취하였다.

## 2) 경북 예천지역 민간인 희생 현장

### 가) 예천군 용궁면 월오리

### 나) 예천군 개포면 금리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들 민간인 희생 현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희생 현장 사진 및 위치는 <붙임(표) 4>와 같다.

## II. 조사 결과

### 1. 사건 배경

#### 가. 해방 후 경북 상주·예천지역의 상황

##### 1) 상주군(현 상주시)

해방 후 상주지역은 유림과 청년 세력의 대립과 좌·우익 대립으로 행정과 치안이 불안했다. 1946년 9월 30일 상주에서는 좌익세력 상층부의 주도로 상주우편국 동맹파업이 단행되었다. 상주소방대<sup>29)</sup>가 경찰 대신 투입되어 상황을 진정시켰고,<sup>30)</sup> 이안면에서 우익단체와 시위 군중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 경찰은 70여 명의 타격대를 구성하여 이를 진압하는<sup>31)</sup> 과정에서 주민 100여 명을 구금시키기도 했다.<sup>32)</sup>

1946년 대구10월사건, 1948년 제주 4·3사건과 여순사건 등을 거치며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자, 상주지역에서도 대구10월사건<sup>33)</sup> 가담자나 좌익 협조자라고 지목된 다수의 주민이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받았다. 미군정 때 임용된 간부들은 주로 한국민주당에 당적을 두었고, 과거 인민위원회 등 좌익계열이었던 사람들과 대립했다.<sup>34)</sup> 1949년 5월에는 화북지서에 무장세력 40여 명이 들이닥쳐 방화하여 화북지서가 전소되기도 했다.<sup>35)</sup>

1950년 6월 25일 인민군이 전면적인 불법 기습 남침을 시도하여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다. 1950년 7월 10일에 국군 통신병 1개 중대가 상주우체국에 주둔하며<sup>36)</sup> 적의 침략에 대응했다. 7월 13일에 괴산을 점령한 인민군 제15사단(사단장: 박성철 소장)이 상주에 들어오자 상주는 전투지역이 되었다. 7월 15일 인민군이 화령장 지구로 진출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국군은 제1군단 제

29) 1911년 상주소방조 설립이 상주소방대의 시초이다. 1939년 일제가 후방 치안의 공고화를 목적으로 소방조를 재편하여 경방단을 설치하였고, 경방단원 일부가 1945년 상주의용소방대를 창설하였다. 1947년 경찰에서 분리되었다가, 1948년 「정부조직법」이 제정되면서 자치소방기구는 다시 경찰행정 체제에 편입되었다. 소방서장은 경찰서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박종열, 「상주의용소방대의 탄생과 활약상」, 『상주문화』 23호, 2013, 425-477쪽.

30) 상주시, 『상주시사』 제1권 역사, 2010, 540-544쪽.

31) 경북지방경찰청, 『경북경찰발전사』, 2001, 61쪽.

32)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9. 5. 13.).

33) 대구10월사건은 해방 직후 미군정이 친일 관리를 고용하고 토지개혁을 지연하며 식량 공출을 강압적으로 시행하는 것 등에 불만을 품은 민간인들과 일부 좌익세력이 경찰과 행정당국에 맞서 발생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1946년 9월 하순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전국적으로 일어난 뒤인 10월 1일에서 2일 사이 대구에서 주민봉기의 형태로 발생했다. 주민봉기 등 일련의 사태는 10월 6일까지 경북 지역으로 번졌고 12월 중순경에는 남한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진실화해위원회, 「대구10월사건 관련 민간인 희생 사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04』, 2010, 64쪽.

34)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강○○ 면담보고(2009. 7. 7.).

35) 『조선중앙일보』(1949. 5. 15.).

36) 금중현, 「통신의 발달과 근·현대 상주우체국의 역사」, 『제15회 상주 근·현대사 학술대회』 자료집, 2020, 141쪽.

17연대(연대장: 김희준 중령)로 하여금 적 선두 부대의 배후를 차단 공격하고, 보은에 있던 제1사단(사단장: 백선엽 대령)과 함께 화서면 상곡리와 화남면 동관리에서 인민군을 격퇴했다.<sup>37)</sup> 국군은 1950년 7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의 화령장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어 상주 침공을 저지했다. 9일간의 지연전으로 전투력을 재정비하고 낙동강 전선을 형성하여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그러나 이미 대전이 함락되어 아군은 전선을 재조정해야만 했다. 제17연대는 육본의 기동예비대로서 대구로 집결하고, 제1사단은 미 제25사단 제24연대(연대장: Horton White 대령)에 진지를 인계하고 철수하며 군단사령부도 안동으로 이동했다.<sup>38)</sup> 7월 26일 전(全)군에 낙동강선으로 철수 준비 명령이 하달되고, 7월 31일에는 소개령이 내려졌다.<sup>39)</sup> 8월 1일 전군에 낙동강 방어선으로 도하 철수 명령이 하달되고 8월 4일 국군이 낙동강 상의 모든 교량을 폭파하여 낙동강 방어 작전으로 전환되었다.

7월 30일부터 9월 하순까지 상주는 인민군에 의하여 점령되었다. 이 시기에 인민군은 상주군 인민위원회라는 자치체를 조직하였고, 식량을 강제 징발하고, 가축을 모아 전선으로 공급하였다. 인민군은 우익인사를 처단하고, 청장년들을 폭탄과 무기 등을 나르는 강제 노역에 동원하고, 피난을 가지 못한 교원이나 지식인을 강제 소집하여 공산주의 교육을 하는 등 인적 자원을 강제로 징집하였다. 7월 말부터 9월 말까지 2개월 동안 많은 상주 주민과 피난민들이 목숨을 잃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sup>40)</sup>

9월 27일 국군이 상주를 수복하여<sup>41)</sup> 상주군청과 경찰서 등 행정관서가 업무를 재개하면서 복구 사업도 시작되었다. 또한 인민군 점령기에 피난을 가지 못한 상주 주민들은 인민군에게 부역했다는 혐의를 받고 희생되었다.

## 2) 예천군

해방 후 1946년 10월 대구에서 시작된 대구10월사건의 여파는 예천을 비롯한 경북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10월 4일 낮 2시경 민주청년동맹(이하 민청)이 주도하는 군중이 민청사무실을 출발하여 예천경찰서로 향하면서 우익청년단체인 광복청년대원들 및 경찰과 대치하게 되었고 10월 5일 유혈 사태로 변했다.

군경이 대구10월사건을 진압하고 좌익을 탄압함으로써 점차 좌익세력은 약화되었고 광복청년대를 비롯한 우익세력의 힘이 강화되었다. 대구10월사건 후 광복청년대는 대동청년단에 흡수되었으

37) 김상호, 「상주지역 한국전쟁의 고찰」, 『상주문화』 제23호, 2013, 322-362쪽.

38) 육군사관학교 전사학과, 『한국전쟁사』, 1987, 306쪽.

39) 금중현, 「통신의 발달과 근·현대 상주우체국의 역사」, 『제15회 상주 근·현대사 학술대회』 자료집, 2020, 141쪽.

40) 1950년 7월 30일부터 9월 하순까지 약 2개월 동안 사망 848명, 부상 336명, 학살 72명, 납치 32명, 행방불명 351명 등 1,640명의 인명피해를 입었다. 군청과 경찰서 등 관공서는 물론 일반 주택도 3,500여 호가 파괴되었다. 상주군청·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 상주문화대전(sangju.grandculture.net) 「6·25 전쟁」 항목.

41) 김상호, 「상주지역 한국전쟁의 고찰」, 『상주문화』 제23호, 2013, 322-362쪽.

며, 대동청년단 예천군지부가 결성되어 왕성한 활동을 전개할 무렵 또다른 우익청년단체인 서북청년회가 결성되었다.<sup>42)</sup> 대구10월사건과 이후 제주 4·3사건, 여순사건 등을 거치며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자 예천지역에서도 상당수의 주민이 대구10월사건에 가담하거나 좌익에 협조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받는 등 한국전쟁 이전까지 경찰의 감시와 관리 대상이 되었다.

한국전쟁 발발 후 인민군의 남하로 단양과 문경지역의 방어선이 무너지자 예천은 전투지역으로 변했다. 1950년 7월 12일 청풍전투에서 분산된 국군 제8사단 제21연대의 일부 병력(제7중대)이 예천읍에 도착하자 문경군 동로면 적성리의 제21연대 9중대를 규합하고 7월 13일 8사단 2개 중대 병력과 경찰병력이 합세하였다. 이 무렵 예천경찰서는 국군과 함께 예천방어선을 구축함과 동시에 예천지역의 국민보도연맹원 등에 대한 예비검속을 진행하였다.

예천읍을 중심으로 방어선을 구축한 국군은 사단 본부의 작전명령에 따라 풍기·영주지구에서 산발적으로 침입해 오는 인민군 수색대와 공방전을 벌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영주에 주둔하던 사단 본부가 주저항선을 풍기-영주 도로로 결정함에 따라 예천에 주둔하던 국군이 영주로 이동하면서 인민군은 예천을 손쉽게 장악하게 되었다.<sup>43)</sup>

1950년 7월 19일 인민군 제8사단은 2개의 중대 병력으로 예천읍을 공격하였다. 당시 예천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던 미군(제25사단 제24연대 제3대대)과 경찰은 안동 방면으로 철수하였다. 당시 예천경찰서 병력은 안동으로 후퇴하고 5개 지서의 병력은 의성군 다인지서로 후퇴하였다. 이들은 국군 제18연대와 합동으로 7월 20일 예천읍을 공격하여 인민군을 일시적으로 몰아내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7월 24일 대규모 병력을 앞세운 인민군에 밀려 내성천으로 후퇴하여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당시 미군 제25사단 제24연대는 국군 수도사단 제18연대에 예천방어선을 맡기고 상주 화령장 지역으로 철수하였고, 7월 31일 안동에서 열린 국군 고급 지휘관 회의에서 방어선 구축이 아닌 상부 명령에 따른 철수 준비를 하면서 인민군은 국군 진지를 공격했다. 인민군의 후방이 된 예천의 한천교, 고평교 등과 인민군 주둔지를 공격했으나 예천·안동 등지를 인민군에게 빼앗기며 낙동강 방어선까지 내어주고, 정부도 부산으로 옮겨갔다.

9월 21일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대대적인 반격을 가하는 등 전쟁이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며 6사단을 필두로 서서히 탈환하며, 국군 제8사단은 9월 26일 예천·안동에서 인민군을 몰아내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약 2개월 동안 예천에서 전투 중 사망한 군인과 경찰의 인적 피해 외에도 예천의 가옥과 교육기관 등이 파괴되는 등 물질 피해도 적지 않았다.<sup>44)</sup>

42) 서북청년회(서북청년단)는 북한에서 월남해 온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청년단체이다. 1948년 대동청년단 예천군지부와 함께 대한청년단(大韓靑年團) 예천군 지부로 통합되었다. 예천군지편찬위원회, 『예천군지 상권: 예천의 역사』, 2005, 270쪽.

43) 예천군지편찬위원회, 『예천군지 상권: 예천의 역사』, 2005, 273쪽.

44) 예천군지편찬위원회, 『예천군지 상권: 예천의 역사』, 2005, 273~274쪽.

## 2. 사건 경위

### 가. 희생 경위

#### 1) 상주군(현 상주시)

1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상주지역에서 22명의 희생 사실을 확인했다. 상주지역 주민들은 1950년 9월 25일과 26일에 북진하는 국군 제1사단 제12연대 선발대에 의해 연행되어 공성면 산현리에서 희생되었고, 일부는 9월 29일(음력 8월 18일) 부대가 이동할 때 공성면 옥산리 산제비골짜기에서 희생되었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김○○(1938년생)는 국군 제12연대가 청리면 가천1리에 연대본부를 두었고, 각 마을로 군인들이 파견되어 만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sup>45)</sup>

#### 가) 내서면 연원리(현 연원동)

##### ○ 진실규명대상자 김○기·전○옥(2다-2724, 신청인 김○분)

진실규명대상자 김○기(金○己, 1897년생, 농업)와 전○옥(全○玉, 1910년생, 상업)은 부부로 내서면 연원리에 거주하던 중 1950년 9월 하순경 국군에 의해 연행되어 내서면 낙서리에서 희생되었다.

신청인 김○분(1941년생, 김○기·전○옥의 딸)의 목격·전문진술<sup>46)</sup>에 따르면, 김○기와 전○옥은 내서면 연원리 ‘쭈안’에 거주하였고, 김○기는 농사를 지으며 전○옥의 음식 장사를 도왔다. 한국전쟁 발발 후 어느 날, 김○분은 김○기와 전○옥, 임신부 한 명이 트럭에 실려 가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전○옥은 손을 저으며 ‘오지 말라’고 하였다. 동네 어른들이 ‘어디에 가서 밥해주고 곧 돌아오실 것’이라고 했지만, 이웃 강○○ 일가가 북진하는 국군 선발대의 차를 가로막고 “여기에 빨갱이가 있다.”라고 거짓 신고를 하여 김○기와 전○옥이 군인에게 연행된 것이었다. 트럭에 실려 연행된 사람들 모두 내서면 낙서리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김○기의 친구들은 김○기와 전○옥의 시신을 수습했고, 건너편 산에 합장묘로 안장하였다. 김○분은 시신 수습 당시 김○기와 전○옥이 엮어져 있었고, 전○옥의 배에 총상이 있었다고 들었다. 유족들은 음력 8월 17일(양력 9월 28일)에 김○기와 전○옥의 제사를 지내고 있다.

참고인 김○○(1942년생, 이웃)의 목격진술<sup>47)</sup>에 따르면, 전쟁이 나서 피난을 다녀온 후 신작로 건너 김○분의 집에 놀러 갔을 때 집 앞에 국방색 군인 트럭이 있었고, 군인들이 총을 들고 김○기와 전○옥을 태우고 있었다. 김○기가 먼저 타고 검정색 치마를 입은 전○옥이 뒤따라 탔고, 김○○의 진외가 친척 김○○의 어머니도 연행하려고 하였다. 김○○의 어머니가 반항하며 도망을 가자

45)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김○○ 진술조서(2010. 1. 8.).

46) 신청인 김○분은 진실규명대상자들의 연행, 시신을 목격하였고, 연행 이유(무고)와 총상 부위에 대해서는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다. 신청인 김○분 진술조서(2022. 8. 9.).

47) 참고인 김○○은 진실규명대상자들이 연행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했다. 참고인 김○○ 진술조서(2023. 6. 23.).

군인들은 만삭인 김○○의 아내를 대신 연행하였다. 이후 모두 총살되었다고 소문이 나서 온동네가 알았고, 시신을 수습하러 다녀온 김○○ 집안의 일꾼들에게 ‘아기를 낳아 팔베개하고 죽어 있더라.’라고 들어 김○○의 아내가 사망한 것을 알았다. 김○기, 전○옥도 시신이 수습되어 사망한 장소 인근에 있는 산에 산소를 썼다.

참고인 김○○(1971년생, 외손자)의 전문진술<sup>48)</sup>에 따르면, 김○기와 전○옥은 전쟁이 나서 피난을 다녀온 후 아군선발대가 들어올 때, 군인에게 연행되었다. 동네 사람들과 가족은 “어디에 밥 해주러 다녀오나 보다”라며 기다렸는데, 3~4일 지나서 낙서리에서 총살된 사람 중에 “이 집 사람인 것 같다.”라며 김○기의 친구들이 현장에 가서 시신을 수습했다. 이웃 강 씨가 김○기와 전○옥을 무고하였는데,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쟁 관계인 데다가 양가의 혼담이 성사되지 않아 사적 감정이 쌓였기 때문이라고 들었다. 김○기의 친구들이 시신을 수습할 때 임산부 피해자도 보았다고 들었고, 김○기와 전○옥의 묘비를 세웠다가 집안에 우환이 들어 묘비를 없앴다.

참고인 김○○(1963년생, 손자)의 전문진술<sup>49)</sup>에 따르면, 6·25 때 김○기와 전○옥이 부역혐의로 끌려가서 조사도 없이 한 날, 한 시에 사망했다. 김○기와 전○옥의 산소에 묘비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제적등본에 김○기와 전○옥이 ‘1950년 8월 3일<sup>50)</sup> 본적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sup>51)</sup>

신청인과 참고인들은 이 사건의 가해 주체로 ‘군인’을 지목하였다. 9월 중·하순에 낙동강 상류에 투입된 부대는 국군 제1사단이며, 미1기병사단과 국군 제1사단이 상주~보은 경로로 이동<sup>52)</sup>하였던 것이 확인된다. 「1사단 12보병연대 부대상보」에 “1950. 9. 26. ~ 10. 6.까지 제1사단 12보병연대가 선산, 옥산을 경유 상주 천리, 가천리로 전진하였다.<sup>53)</sup>”라는 기록이 있고,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상주지역 주민들이 피난을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1950년 9월 25일(음력 8월 14일)부터 9월 26일(음력 8월 15일) 사이와 9월 29일(음력 8월 18일)에 국군 제1사단 제12연대 군인에 의해 희생되었다고 진실규명하였다.<sup>54)</sup> 따라서 김○기와 전○옥도 국군 제1사단 제12연대 군인에 의해 희생되었다고 판단된다.

신청인과 참고인의 진술, 김○기와 전○옥의 제삿날, 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구미·김천·상주·영덕·포항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의 희생시기를 근거로 김○기와 전○옥의 희생시기는 1950년 9월 하순경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1) 신청인 김○분이 김○기와 전○옥의 희생 경위를 목격한 바에 따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2) 참고인 김○○가 김○기와 전○옥이 연행되는 장면을 목격한 바에 따라 진술하고, 진술이 신청인 김○분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3) 상주시 내서면

48) 참고인 김○○은 진실규명대상자들의 희생 사실에 대해 어머니(김○분), 외삼촌들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다. 참고인 김○○ 진술조서(2023. 9. 23.).

49) 참고인 김○○은 사건 내용을 아버지(김○○, 1934년생, 진실규명대상자의 차남)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다. 참고인 김○○ 통화보고서(2024. 5. 18.).

50) 음력 날짜로 판단되며, 1950년 양력 9월 14일이다.

51) 사망신고일은 서기 1962년 5월 23일, 신고자는 동거친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2) 온창일·정토웅·김광수·나종남·양원호, 『한국전쟁사 부도』, 도서출판 황금알, 2021, 94-95쪽.

53) 육군본부, 「민원회신(김○분, 2AA-2103-1246425)」(\*\*\*\*\*-1013, 2021. 4. 9.).

54) 1기 진실화해위원회, 「구미·김천·상주·영덕·포항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2010, 647-734쪽.

낙서리에서 김○기와 전○옥의 시신이 수습된 점, (4) 제적등본에서 확인되는 김○기와 전○옥의 사망일자(1950년 음력 8월 3일, 양력 9월 14일)가 김○기와 전○옥의 제삿날(음력 8월 17일, 양력 9월 28일)과 근접하며 이 사건의 발생시기에 포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진실규명대상자 김○기와 전○옥(2다-2724)은 경북 상주·예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1950년 9월 하순경 국군에 의해 연행되어 내서면 낙서리에서 희생되었다고 판단된다.

## 나) 상주읍 죽전리(현 죽전동)

### ○ 진실규명대상자 김○규(2다-16643, 신청인 김○태)

진실규명대상자 김○규(金○圭, 1921년생, 교사)는 상주읍 죽전리에 거주하던 중 1950년 10월 4일 경찰에 연행되어 상주읍 계산리(현 계산동)에서 희생되었다.

신청인 김○태(1948년생, 김○규의 아들)의 전문진술<sup>55)</sup>에 따르면, 김○규는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하고<sup>56)</sup> 교직에 종사했으며<sup>57)</sup> 한국전쟁 발발 당시 상산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했다.<sup>58)</sup>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동네 사람들이 다 피난 갈 때 김○규와 가족들도 피난길에 올라 낙동강까지 갔다. 그러나 배가 와도 줄이 밀려 타지 못하다가 집으로 돌아왔고, 피난 갈 때 만삭이었던 김○규의 아내는 9월 12일(음력 8월 1일)에 막내딸 김○○을 낳았다. 김○규의 아버지 김○○은 장날 전날<sup>59)</sup>에 1차로 붙잡혀 간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김○규에게 돈을 주며 ‘처가에 가서 피해 있으라.’라고 했다. 김○규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안 떠난다.’라며 집에 머물렀다. 삼칠일(10월 3일, 음력 8월 22일) 무렵, 몇 사람이 집으로 김○규를 찾아왔고, 김○규를 데리고 나갔다. 이후 김○규의 아버지는 잡혀간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시장에서 들었고, 옥산 화장장 쪽에서 김○규의 시신을 찾아지게에 지고 와 삼일장을 지냈다. 집에서 보이는 위치에 산소 자리를 잡았다가 김○규의 아내가 “가슴 아파 어떻게 보고 사느냐”고 하여 집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산소를 썼다. 현재 가족들은 10월 3일에 김○규의 추도식<sup>60)</sup>을 지낸다.<sup>61)</sup>

55) 신청인 김○태는 진실규명대상자 김○규의 희생 사실에 대해 할머니, 큰누나, 작은누나, 이웃에게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다. 신청인 김○태 진술조서(2023. 4. 7.).

56) 신청인 김○태는 진실규명대상자 김○규가 1940년에 대구사범 7회로 졸업했다고 진술했으나, 신청인이 제출한 김○규의 졸업앨범은 『대구사범학교 제8회 졸업기념사진첩』(소화(昭和) 16년(1941년) 3월)이다. 졸업앨범과 학적부를 통해 김○규는 대구사범학교 8회 졸업생으로 확인되었다. 경북대학교, 「과거사 정리 및 진실규명 조사 관련 의뢰자료 송부(김\*규)」(학사과-340, 2024. 1. 9.); 진실화해위원회, 『자료 입수 보고(2다-16643, 족보, 사진 등)』(조사3과-91, 2024. 1. 8.).

57) 김○규가 울릉도 소재 남양국민학교에서 교장으로 재직하였다는 기록과 남양국민학교에서 천부국민학교로 전근한 기록을 확인하였다. 경상북도교육청, 「재직 기록 의뢰 요청(김○규, 2다-16643)에 대한 자료 송부」(유초등교육과-22146, 2023. 10. 18.); 경상북도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울릉군 관내 학교 재직 관련 기록 송부(김○규)」(교육지원과-7808, 2023. 10. 19.).

58) 진실화해위원회는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에 김○규의 교원 인사기록을 요청했으나 “현재 보유 중인 교원 인사기록은 1952년 이후의 자료만 있으므로 이전 기록은 조화가 불가능함”이라고 회신받았다.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재직 기록 의뢰 요청에 대한 회신」(교육지원과-28342, 2023. 11. 30.).

59) 상주 장날은 매 2일과 7일이므로 해당일은 1950년 10월 1일이다. 진실화해위원회, 『상주지역 사건 관련 자료 입수 보고(2다-16643, 상주 장날)』(조사3과-2320, 2024. 6. 13.).

60) 신청인이 ‘제사’라고 진술했지만, 기독교인으로서 양력 날짜를 기준으로 추도식을 지낸다.

61) 신청인 김○태 진술조서(2023. 4. 7.).

참고인 김○○(1946년생, 김○규의 딸)의 목격진술<sup>62)</sup>에 따르면, 9월 12일(음력 8월 1일)에 김○이 태어난 후 어느 날, 저녁이 되어가는 오후에 몇 사람이 집으로 김○규를 찾아와 함께 골목을 나갔다. 김○규는 김○○에게 들어가라고 손짓하면서 ‘들어가라, 내일 올게’라고 말했다. 김○규의 장례식에 온 김○규의 고모 등 어른들은 ‘너희 아버지는 피난 못 가서 죽었다.’라고 말하였다. 가족들은 김○규가 피난을 가지 않았다고 이웃이 신고했다는 말을 들었다. 김○규의 아버지는 화병으로 3년 뒤에 사망했다.

참고인 김○○(1943년생, 김○규의 딸)에 따르면, 김○규는 가족들과 낙동강을 건너려고 줄을 서 있다가 “전쟁이 끝났으니 집에들 가시라”는 안내를 듣고 귀가했다. 김○○은 돌아오는 길에 차를 타고 이동하는 흑인 군인의 행렬<sup>63)</sup>과 마주쳤고, 집에 왔더니 동네는 빈집이 많았다. 어느 날, 김○규의 아버지가 김○규에게 처가에 숨어 있으라고 했을 때, 김○규는 ‘떴떴하게 말하고 나올 것’이라며 도피하지 않았다. 김○○은 “○○○는 색출해서 죽인다는 소문이 났을 때 이웃 부원리에서는 사람들이 감춰줬다는데 우리 동네는 밀고한 것 같다.”라고 하였다.<sup>64)</sup>

참고인 김○○(1932년생, 친척)의 전문진술<sup>65)</sup>에 따르면, 김○규가 어린 자녀들과 만삭인 부인을 데리고 피난을 갔다가 낙동강을 건너지 못하고 돌아왔다. 국군이 상주를 수복했을 때 “인민군 쪽에서 김○규에게 감투를 씌어 놓았던 이유로” 붙잡혀 가서 계산동 화장터 부근(현 상주시민운동장<sup>66)</sup>)에서 총살되었다. 시신은 수습되어 부원리에 있는 김○○ 가족의 산에 산소를 썼고, 사람들은 “죄가 있다면 피난 안 간 게 죄”라고 말하였다.

62) 참고인 김○○은 진실규명대상자 김○규의 연행 장면과 장례식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참고인 김○○ 진술조서(2023. 6. 19.).

63) 미군 흑인부대인 제25사단 제24연대(연대장: Horton White 대령)가 상주에서 전투에 참여한 기간은 1950년 7월 26일부터 30일 까지이다. 이후 8월 2일에 차량으로 또는 걸어서 상주를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김○규가 가족들과 귀가한 날은 1950년 8월 2일로 추정된다. William T. Bowers, William M. Hammond & George L. MacGarrigle, 『Black Soldier, White Army-The 24th Infantry Regiment in Korea』, 1996, 67-109쪽, 128쪽.

64) 진실화해위원회, 「자료 입수 보고(2다-16643, 문자)」(조사3과-90, 2024. 1. 8.).

65) 참고인 김○○은 진실규명대상자의 희생 사실을 집안 어른들에게 들었다고 진술했다. 참고인 김○○ 면담보고서(2024. 5. 27.).

66) 상주시민운동장(1986. 12. 3. 착공, 1991. 1. 14. 준공)은 상주시 계산동(474-1번지)과 화산동(1060번지~1064번지와 1072번지)에 걸쳐 있다.

〈사진 2〉 진실규명대상자 김○규가 수업하는 모습<sup>67)</sup>

제적등본에 김○규가 ‘1950년 8월 23일 오후 3시 상주군 상주읍 화산리 미상 번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sup>68)</sup>

족보에 김○규가 1950년 8월 23일(양력 10월 4일)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sup>69)</sup>

『제4대국회보고서』에 김○규에 대해 ‘[피살연월일] 1950년 음력 8월 23일(양력 10월 4일) [피살장소] 경북도 상주군 상주읍 계산2구 뒷산 [경찰관계] 4283년 6월 25일 사변 이후 일반민 피난 명령 당시 미피난 중 잔류하여 부락인민위원회 위원장직으로서 경찰에 피살됨(신고인 김○○, 장남)’<sup>70)</sup>이라고 기재되어 있다.<sup>71)</sup>

67) 참고인 김○○는 김○규가 울릉도 소재 학교에 재직하던 당시 사진이라고 설명했다. 김○규가 울릉군 남양국민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다가 ‘1945년 11월 1일 상주군 옥산공립국민학교로 전출’되었으므로 1945년 11월 이전 사진으로 추정된다. 참고인 김○○ 진술조서(2023. 6. 19.); 경상북도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울릉군 관내 학교 재직 관련 기록 송부(김○규)」(교육지원과-7808, 2023. 10. 19.).

68) 제적등본의 사망일인 8월 23일이 족보의 사망일과 일치하므로 음력 날짜로 추정되며, 1950년 음력 8월 23일은 양력 10월 4일이다. 사망신고일은 단기 4284년(1950년) 9월 1일, 신고자는 호주라고 기재되어 있다.

69) 순종(純宗) 신유(辛酉) 12월 23일 생(生) 경인(庚寅) 8월 23일 졸(卒) 묘(墓) 압곡(鴨谷) 신(辛) 좌(坐). 『김해김씨선원대동세보 갑1편 하(金海金氏璿源大同譜 甲一編 下)』, 1974.

70) 신청인 김○태는 양민피살자신고서는 본인이 제출한 것이 아니라며, 마을에서 냈거나 집안 종손이 제출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신청인 김○태 진술조서(2023. 4. 7.).

71) 「양민피살자신고서」, 『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6-9)』, 1960, 80쪽.

신청인 김○태의 큰누나 김○○의 상산국민학교 「생활기록부」에 ‘입학연월일’은 ‘단기 4283년 6월 1일’, ‘입학 당시 가정환경’의 부(父) 항목에 ‘김○규, 34세, 교원’, ‘그 후의 변화’에 ‘부친 사망, ‘조부 사망’이 차례로 기재되어 있다.<sup>72)</sup> 그 외 큰누나 김○○,<sup>73)</sup> 작은누나 김○○,<sup>74)</sup> 신청인 김○태<sup>75)</sup>의 「생활기록부」에 ‘입학 당시 가정환경’에 ‘부친 사망’으로 기록되어 있다.

신청인 김○태와 작은누나 김○○, 여동생 김○○의 통지표 등<sup>76)</sup>에 보호자가 김○규로 기재되지 않고, 김○규의 아내, 아버지, 어머니로 기재되어 있다.

## 〈표 2〉 김○규의 자녀 통지표의 보호자 기재 사항

| 연번 | 연도                 | 학교     | 학생  | 학년 | 보호자                  | 관계   |
|----|--------------------|--------|-----|----|----------------------|------|
| 1  | 단기 4289년(서기 1956년) | 상산국민학교 | 김○○ | 1  | 식별 불가 <sup>77)</sup> |      |
| 2  | 단기 4291년(서기 1958년) | 상산국민학교 | 김○○ | 6  | 김○○                  | 어머니  |
| 3  | 단기 4291년(서기 1958년) | 상산국민학교 | 김○태 | 5  | 김○○                  | 할아버지 |
| 4  | 단기 4291년(서기 1958년) | 상산국민학교 | 김○○ | 3  | 김○○                  | 어머니  |
| 5  | 단기 4292년(서기 1959년) | 상산국민학교 | 김○태 | 6  | 박○○                  | 할머니  |
| 6  | 단기 4292년(서기 1959년) | 상산국민학교 | 김○○ | 4  | 김○○                  | 어머니  |
| 7  | 단기 4293년(서기 1960년) | 상산국민학교 | 김○○ | 5  | 김○○                  | 어머니  |

신청인과 참고인의 진술, 제적등본과 족보, 제4대국회 보고서 등을 근거로 할 때, 김○규의 희생 시기는 1950년 10월 4일로 판단된다.

김○규가 희생된 장소에 대해 신청인 김○태는 ‘상주 옥산 화장장 쪽’, 참고인 김○○는 ‘계산동 화장터’라고 진술하였고, 제적등본에는 ‘화산리 미상 번지’로 기재되어 있다. 상주지역의 공설화장장은 현재 상주시민운동장 부지에 있었고, 상주시민운동장은 화산동과 계산동에 걸쳐 있기 때문에 김○규가 희생된 장소로 지목된 화산동과 계산동 모두 가능하다. 다만 1924년 낙성식 기사<sup>78)</sup>에 따르면 ‘계산화장장’이었고, ‘상주읍 계산리 481-1번지’였다는 기록<sup>79)</sup>에 따라 김○규의 희생 장소는 ‘계산리 화장장’으로 정리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1) 신청인 김○태가 김○규의 희생 경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

72) 상산초등학교, 「학적기록 조회 의뢰 회신」(상산초등학교-14726, 2023. 12. 8.).

73) 1950년 6월 1일에 입학하여 1956년 3월 20일에 졸업하였다. 상산초등학교, 「학적기록 조회 의뢰 회신」(상산초등학교-14726, 2023. 12. 8.).

74) 1953년 4월 1일에 입학하여 1959년 3월 28일에 졸업하였다. 상산초등학교, 「재직기록 및 학적기록 조회 의뢰 회신」(상산초등학교-14476, 2023. 12. 5.).

75) 1963년 3월 7일에 입학하여 1967년 1월 26일에 졸업하였다. 대건고등학교, 「학적 기록 조회 의뢰 회신」(대건고등학교-15179, 2023. 11. 28.).

76) 신청인 김○태가 제출한 김○태, 김○○, 김○○의 ‘통지표’, ‘아동생활통지표’, ‘통신부’이다. 진실화해위원회, 『자료 입수 보고(2차-16643, 족보, 사진 등)』(조사3과-91, 2024. 1. 8.).

77) 통지표의 ‘보호자’란에 찍힌 도장의 이름은 식별하기 어려우나, 김○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78) 화장장 낙성식. 『조선신문』, 1924. 10. 16.

79) 「상주군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제470호)」, 경상북도 상주군 내무과, 1977. 4. 25.

술하고 있는 점, (2) 참고인 김○○가 김○규가 연행되는 장면을 목격한 바에 따라 진술하고, 참고인 김○○ 등 다수의 진술이 신청인 김○태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3) 상주읍 계산리에서 김○규의 시신이 수습된 점, (4) 제적등본과 족보에서 확인되는 김○규의 사망일자(1950년 8월 23일, 양력 10월 4일)와 그에 따른 김○규의 제삿날(음력 8월 22일, 양력 10월 3일)이 일치하는 점, (5) 『제4대 국회보고서』에 김○규의 희생이 신고된 점, (6) 김○규 자녀들의 통지표에 보호자가 김○규의 아버지·어머니·아내로 기록되어 있어 김○규의 사망을 추정할 수 있는 점, (7) 김○규의 딸 김○○의 학적부에 1950년 6월 1일 입학 당시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 있으나 이후 ‘부친 사망’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김○규의 사망일을 1950년 6월 이후로 추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진실규명대상자 김○규(2다-16643)는 경북 상주·예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1950년 10월 4일 경찰에 연행되어 상주읍 계산리에서 희생되었다고 판단된다.

## 2) 예천군

1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예천지역에서 35명의 희생 사실을 확인했다. 예천지역 주민들은 1949년 3월 1일부터 1951년 9월 15일까지 예천경찰서와 관할지서 소속 경찰에 의해 연행되어 예천읍 청북동 고평나들, 개포면 경진리 서울나들, 용궁면 산택리 원당고개(벼락고개)에서 희생되었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안○○(1929년생)은 전쟁이 발발하기 전인 1949년 2월경 용궁면 사무소에 면서기로 입직했는데, 그해 늦여름에 안○○ 등이 경찰에 의해 희생되었다고 진술했다.<sup>80)</sup>

### 가) 용궁면 월오리

#### (1) 진실규명대상자 박○대(2다-300-1, 신청인 박○봉)

진실규명대상자 박○대(朴○大, 1921년생, 농업)는 용궁면 월오리에 거주하던 중 1949년 8월 하순경 경찰에 연행되어 예천읍 청북동에서 희생되었다.

신청인 박○봉(1950년생,<sup>81)</sup> 박○대의 조카)의 전문진술<sup>82)</sup>에 따르면, 박○대는 용궁면 월오리 ‘다래이’에 거주하며 농사를 지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 여름, 지서에서 모임이 있다고 하며 마을 청년들을 소집시켰고, 박○대는 소집에 응했다가 희생되었다. 당시 동네 청년들이 경찰에 의해 강제로 연행되었고, 모두 사살되었다. 박○대의 형 박○○가 동네 사람들과 함께 사건 현장에 갔을 때, 경찰들이 경비를 서서 시신을 찾았지만 모셔오지 못하고 가매장을 해 놓았는데, 며칠 후 다시 갔을 때는 찾아올 수 없었다. 신청인은 아버지(박○○) 생전에는 삼촌 박○대의 제사를 지냈지만, 현재는 명절에 차례만 지내고 있다.

80) 1기 진실화해위원회 참고인 안○○ 진술조서(2010. 4. 8.).

81) 실제로는 1949년생이라고 진술했다. 신청인 박○봉 진술조서(2022. 7. 1.).

82) 신청인 박○봉은 진실규명대상자 박○대의 희생 사실에 대해 아버지, 고모, 오촌당숙에게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다. 신청인 박○봉 진술조서(2022. 7. 1.).

참고인 박○○(1936년생<sup>83)</sup> 박○대의 조카)의 전문진술<sup>84)</sup>에 따르면, 박○대는 용궁면 월오리에 살며 농사를 지었다. 마을에는 안 씨와 양 씨가 많이 살았고 박 씨는 박○대와 형 박○○의 가족만 살았다. 박○대의 가족은 문경에서 예천으로 이주하여 마을의 상황을 잘 모르고 지내다가 한국전쟁이 나기 전, 박○대는 집으로 찾아온 경찰에 의해 연행되어 사망했다. 삼십 대 초반<sup>85)</sup>인 박○대가 사망한 후 박○대의 아내는 재가했다. 박○대가 사망한 이듬해에 참고인의 오빠 박○○<sup>86)</sup>이 박○대처럼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고, 박○○이 용궁면 산택리에서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부모님이 오빠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를 치렀다.<sup>87)</sup>

참고인 안○○(1941년생<sup>88)</sup>, 이웃)와 김○○(70대, 이웃)의 전문진술<sup>89)</sup>에 따르면, 박○대의 가족이 안○○의 집안에서 일했고, 순흥 안 씨 집성촌에서 유일한 박 씨였기 때문에 당시에 박○대가 경찰에 의해 사망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전쟁나기 한 해 전에 우리 마을에서 40명 정도 죽었고, “한 집에 두 명씩 죽은 세 집<sup>90)</sup> 중 한 집”이라고 진술했다. 안○○의 아버지(안○○)<sup>91)</sup>도 1949년 음력 7월 28일(양력 8월 22일) 경찰에 의해 연행된 후 희생되어 음력 7월 27일에 제사를 지낸다.

제적등본에 박○대가 ‘1950년 7월 20일<sup>92)</sup> 오후 7시 예천군 용궁면 월오리 204번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sup>93)</sup>

족보에 박○대가 음력 9월 10일 사망하였고, 묘의 위치는 선조 아래라고 기재되어 있다.<sup>94)</sup>

『제4대국회보고서』에 박○대에 대해 “[피살연월일] 1949년 8월 25일 [피살장소] 경북도 예천군 예천면 청북리 [경찰관계] 경찰에 의하여 연행되어 피살되었음(신고인 박○○, 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sup>95)</sup>

『피해자현황조사』에 “박○대, 월오리, 28세, 남성, 농업, 1949년 8월 25일 예천읍 청북리에서 총살, 가해자-경찰”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83) 실제로는 1934년생이라고 진술했다. 참고인 박○○ 진술조서(2022. 6. 22.).

84) 참고인 박○○은 진실규명대상자 박○대의 연행 및 희생 사실에 대해 아버지, 어머니에게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다. 참고인 박○○ 진술조서(2022. 6. 22.).

85) 박○대의 출생연도가 제적등본에 1921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족보에는 1920년생으로 되어 있으므로 삼십 대다. 『밀양박씨 사문진사공파세보 4』, 1984.

86) 2다-300-2의 진실규명대상자이다.

87) 참고인 박○○은 박○○의 연행, 시신, 장례식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참고인 박○○ 진술조서(2022. 6. 22.).

88) 실제로는 1938년생이라고 진술했다. 참고인 안○○ 진술조서(2024. 5. 17.).

89) 참고인 안○○은 진실규명대상자의 희생 사실을 집안 어른들, 동네 어른들로부터 전해 들었고, 참고인 김○○은 안○○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다. 참고인 안○○ 진술조서(2024. 5. 17.); 참고인 김○○ 면담보고(2024. 5. 17.).

90)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예천군 용궁면 월오리에서 한 집에 두 명이 죽은 사람은 박○대(2다-300-1)와 박○○(2다-300-2), 안○목과 안○진(이상 2다-1041), 1기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대상자 양○○과 양○○(이상 다-2912, 진실규명)이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 『예천·문경 민간인 희생 사건』, 2010. 6. 30.

91) 1기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대상자 안○○(다-2928, 진실규명)이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 『예천·문경 민간인 희생 사건』, 2010. 6. 30.

92) 1949년 음력 7월 20일이라면, 양력 8월 14일이다.

93) 사망신고일은 단기 4284년(1951년) 3월 29일, 신고자는 호주라고 기재되어 있다. 호주는 박○대의 형 박○○이다.

94) 영규(永珪) 자(字) 용문(龍文) 생(生) 1920년 경신(庚申), 기(忌) 9월 10일, 묘(墓) 선조(先兆) 하(下). 『밀양박씨 사문진사공파세보 4』, 1984.

95) 『양민파살자신고서』, 『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6-10)』, 1960, 112쪽.

『제4대국회보고서』에 기록된 박○대의 사망일자 1949년 8월 25일은 같은 마을에서 희생된 안○<sup>96)</sup>과 안○○<sup>97)</sup>의 『제4대국회보고서』에 기재된 사망일(1949년 8월 25일)과 일치한다. 따라서 박○대의 희생 시기는 1949년 8월 하순경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1) 신청인 박○봉이 박○대의 희생 경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2) 참고인 다수의 진술이 신청인 박○봉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3) 『제4대국회보고서』에 박○대의 희생이 신고된 점, (4) 『피해자현황조사』에 박○대의 희생이 기록된 점, (5) 『제4대국회보고서』에 기재된 박○대가 1949년 8월 25일에 경찰에 의해 사망했다는 내용이 동일 지역 내 1기 진실규명대상자의 사망일 및 희생경위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진실규명대상자 박○대(2다-300-1)는 경북 상주·예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1949년 8월 하순경 경찰에 연행되어 예천읍 청북동에서 희생되었다고 판단된다.

## (2) 진실규명대상자 안○목·안○진(2다-1041, 신청인 안○진)

진실규명대상자 안○목(安○睦<sup>98)</sup>, 1892년생, 농업)과 안○진(安○鎭<sup>99)</sup>, 1932년생, 농업)<sup>100)</sup>은 용궁면 월오리에 거주하던 중 1949년 음력 3월 1일(양력 3월 30일) 경찰에 의해 용궁면 월오리에서 희생되었다.

신청인 안○진(1940년생, 안○목의 아들, 안○진의 동생)의 목격진술<sup>101)</sup>에 따르면, 안○목의 가족은 용궁면 월오리 ‘나산’의 기천서원(箕川書院) 옆에 살며 서원을 관리하고 농사를 지었다. 안○목의 집은 산자락 아래에 있는 독가촌이었고, 뒷산에는 산사람이 살며 종종 서원으로 숨어들거나 집으로 와서 양식을 달라고 하여 주는 일이 있었다. 1949년 음력 3월 1일(양력 3월 30일) 새벽, 안○목이 쇠죽을 끓이려고 여물통을 들고 마당을 지나오다가 집안에 들이닥친 경찰에게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 이 광경을 본 안○진이 경찰에게 반항하다가 얼굴을 총부리에 맞고 경찰에 연행되었다. 몇 시간 후에 동네 어르신들이 ‘가래미’<sup>102)</sup> 마을 개울가에서 총살된 안○진의 시신을 수습하여 집으로 왔다. 그 후에도 마을 청년들이 자주 연행되어 희생되었다고 들었다. 가족들은 마을 가까운 곳에 안○목과 안○진의 산소를 썼고, 2월 그믐에 제사를 지낸다.

96) 「양민피살자신고서」, 『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6-10)』, 1960, 116쪽.

97) 안○○은 1기 진실화해위원회 및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된 바 없다. 「양민피살자신고서」, 『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6-10)』, 1960, 114쪽.

98) 안○목은 제적등본에 “安○睦, 1892년 3월 14일생”으로 기록되어 있고, 족보에 “安○穆, 임진(壬辰)(1892년)생”으로 기록되어 있다. 제적등본과 족보의 ‘목’자가 각각 ‘화목할 목’의 이형한자(穆, 睦)로 기록되어 있는데, 제적등본과 족보의 가족관계가 일치하여 동일인임이 확인된다.

99) 안○진은 제적등본에 安○鎭, 1932년 12월 28일생으로 기록되어 있고, 족보에 安○鎭, 신미(辛未)(1931년)생으로 기록되어 있다. 제적등본에 ‘이름 ○’, 족보에 ‘밝을 ○’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제적등본과 족보의 가족관계가 일치하여 동일인임이 확인된다.

100) 안○진은 안○목의 장남이다.

101) 신청인 안○진은 진실규명대상자 안○목의 희생과 시신, 진실규명대상자 안○진의 연행과 시신을 각각 목격하였다고 진술했다. 신청인 안○진 진술조서(2022. 6. 30.); 신청인 안○진 면담보고서(2024. 5. 14.).

102) 마을 뒷산에 담쟁이가 많아 가래산(가라산, 加羅山)이라고 명명된 산 밑에 있으며, 산 이름에서 유래한 지명으로 나산(羅山)이라고 불렸다. 예천군지편찬위원회, 『예천군지 중권: 예천의 생활문화』, 2005, 110쪽.

참고인 안○○(1940년생,<sup>103</sup> 이웃)의 목격진술<sup>104</sup>에 따르면, 안○○는 안○진의 집 뒤로 난 지름길로 함께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아침 등굣길에 안○진의 집에 들렀다가 시신을 수습해서 마당에 눕히고 가마니로 덮어 놓은 광경을 목격했다. 당시 좌우익 갈등이 있었는데, 안○목이 좌익들에게 밥을 준 적이 있어서 경찰들이 집으로 들이닥쳐 그냥 총을 쏘아 죽였고, 안○진은 경찰서로 데려가던 중에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방터’에서 죽었다고 들었다. 안○진과 동명 이인이고 연장자인 ‘○○ 할배’ 안○○(安○○)<sup>105</sup>이라는 주민도 경찰에 의해 희생되었다.

참고인 안○○(1968년생, 안○목의 손자, 안○진의 조카)의 전문진술<sup>106</sup>에 따르면, 안○목과 안○진은 새벽에 산자락 밑에 있는 집으로 들이닥친 경찰과 경찰 앞잡이에 의해 총살되었는데, 경찰이 산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 좌익으로 오해받아 죽은 사건이라며 연좌제로 인한 추가 피해를 우려하여 자녀가 자리를 잡은 후에야 집안 내력을 말할 수 있었다.

참고인 안○○(1941년생, 이웃)의 전문진술<sup>107</sup>에 따르면, 안○목과 안○진은 기천서원 옆에 살던 농부였는데, 같은 순흥 안 씨 집안이라 당시에 안○목과 안○진이 경찰에 의해 사망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전쟁나기 한 해 전에 우리 마을에서 40명 정도 죽었고, “한 집에 두 명씩 죽은 세 집 중 한 집”이라고 진술했다.

제적등본에 안○목이 “1952년 6월 26일 오전 5시 예천군 용궁면 월오리 1151번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고, 안○진은 “1952년 7월 1일 오전 3시 예천군 용궁면 월오리 1151번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sup>108</sup>

죽보에 안○목과 안○진이 ‘기축(己丑)(1949년) 음력 3월 1일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sup>109</sup>

『제4대국회보고서』에 안○목에 대해 “[피살연월일] 1948년 3월 1일 [피살장소] 경북도 예천군 용궁면 나산리 [경찰관계] 적색분자의 침소 또는 양식을 제공하였다 하여 자가에서 경찰에서 총살당 하였음(신고인 안○○, 아들)”이라고 기재되어 있고,<sup>110</sup> 안○진에 대해 “[피살연월일] 1949년 3월 1일 [피살장소] 경북도 예천군 용궁면 나산리 [경찰관계] 공산주의 사상이 있다고 연행 중 나산 동리 앞에서 총살(신고인 안○○, 동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sup>111</sup>

103) 실제로는 1939년생이라고 진술했다. 참고인 안○○ 진술조서(2024. 5. 14.).

104) 참고인 안○○는 진실규명대상자 안○목과 안○진의 시신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참고인 안○○ 진술조서(2024. 5. 14.).

105) 1기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대상자 안○○(다-2922, 진실규명)이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 『예천·문경 민간인 희생 사건』, 2010. 6. 30.

106) 참고인 안○○는 진실규명대상자 안○목과 안○진의 희생 사실에 대해 아버지 안○진에게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다. 참고인 안○○ 진술조서(2024. 5. 14.).

107) 참고인 안○○는 집안 어른들, 동네 어른들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다. 참고인 안○○ 진술조서(2024. 5. 17.).

108) 안○목의 사망신고일은 서기 1952년 6월 26일, 안○진의 사망신고일은 서기 1952년 7월 2일이며, 신고자는 동거친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제적등본의 사망일이 신청인과 참고인의 진술, 족보의 기재에 따른 사망일과 다른 이유에 대해 참고인 안○○는 ‘출생신고나 사망신고를 각자 직접 한 게 아니라 동네 반장이 대신 처리했기 때문에 늦어진 것이라고 들었다.’라고 진술했다. 참고인 안○○ 진술조서(2024. 5. 14.).

109) 기축(己丑) 3월 1일 졸 묘(墓) 서당산(書堂山) 임좌(壬坐). 『순흥안씨족보 을편종(乙篇終)』, 1956.

110) 「양민피살자신고서」, 『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6-10)』, 1960, 80쪽.

111) 「양민피살자신고서」, 『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6-10)』, 1960, 85쪽.

『피해자현황조사』에 “안○목, 월오리, 20세, 남성, 농업, 1948년 3월 1일 용궁면 월오리에서 총살, 가해자-경찰”, “안○진, 월오리, 17세, 남성, 농업, 1947년 3월 1일 용궁면 월오리에서 총살, 가해자-기타”라고 기록되어 있다.

안○목과 안○진의 희생시기와 관련된 기록 중 족보가 사건 발생 후 가장 근접한 시점에 작성된 기록이며, 신청인 및 목격참고인이 진술한 희생 시기(1949년 음력 3월 1일, 양력 3월 30일)와 일치하므로 안○목과 안○진의 희생 시기는 1949년 3월 30일로 판단된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1) 신청인 안○진이 안○목과 안○진의 희생 경위를 목격한 바에 따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2) 참고인 다수의 진술이 신청인 안○진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3) 족보에서 확인되는 안○목과 안○진의 사망일자(1949년 3월 1일)와 그에 따른 안○목과 안○진의 제삿날(2월 그믐)이 일치하는 점, (4) 『제4대국회보고서』에 안○목과 안○진의 희생이 신고된 점, (5) 『피해자현황조사』에 안○목과 안○진의 희생이 기록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진실규명대상자 안○목과 안○진(2다-1041)은 경북 상주·예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1949년 음력 3월 1일(양력 3월 30일) 경찰에 의해 용궁면 월오리에서 희생되었다고 판단된다.

## 나) 개포면 금동(현 금리)

### ○ 진실규명대상자 박○성(2다-7864, 신청인 박○호)

진실규명대상자 박○성(朴○成, 1907년생, 농업)은 개포면 금동에 거주하던 중 1949년 음력 7월 13일(양력 8월 7일) 경찰에 의해 개포면 금동에서 희생되었다.

신청인 박○호(1948년생, 박○성의 손자)의 전문진술<sup>112)</sup>에 따르면, 박○성은 해방 전에 일본에서 살다가 해방 후 귀국하여 개포면 금리 ‘직골’에 살며 농사를 지었다. 1949년 음력 7월 13일(양력 8월 7일), 박○성은 집에서 떨어져 있는 ‘방기터’<sup>113)</sup>의 목화밭에 김매러 갔는데, 지서주임 김○○, 특무대장 김○○, 차석 강○○이 박○성의 행방을 물었다. 박○성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가족, 친척, 동네 사람들이 ‘방기터’로 찾아가 박○성과 이웃 한○○이 총살된 것을 발견했다. 가족들은 시신을 수습하여 집 뒤 문중 산에 산소를 썼고, 음력 7월 13일에 박○성의 제사를 지낸다. 가족들은 박○성과 한○○이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들었다.

참고인 박○○○(1942년생, 박○성의 딸)의 목격진술<sup>114)</sup>에 따르면, 박○성은 일본에서 공장을 운영하다가 일본에 폭탄이 떨어질 때 병이 난 아내가 고향에 가면 낫겠다고 하여 귀국한 후 반머슴을 두고 농사를 지었다. 박○성은 ‘○○ 어른’<sup>115)</sup>과 의형제를 맺고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112) 신청인 박○호는 진실규명대상자 박○성의 희생 사실에 대해 증조할머니, 아버지, 고모에게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다. 신청인 박○호 진술조서(2022. 4. 20.); 신청인 박○호 면담보고서(2024. 5. 17.).

113) 금골 서쪽 안에 있는 골짜기인 양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방 씨와 지 씨가 살았다는 곳이다. 예천군지편찬위원회, 『예천군지 중권: 예천의 생활문화』, 2005, 116쪽.

114) 참고인 박○○○는 진실규명대상자 박○성이 사망한 것을 최초로 발견한 목격자이다. 참고인 박○○○ 진술조서(2024. 5. 17.).

115) ‘○○ 어른’은 한○○의 택호이고, 한○○과 한○○의 아버지이다. 참고인 박○○○ 진술조서(2024. 5. 17.).

다고 했는데, 함께 경찰에 의해 총살되었다. 1949년 음력 7월 열이틀에 박○성이 밥때가 되어도 오지 않자 박○성의 어머니가 ‘목화밭에 가보라’고 하여 나가보았고, 박○성은 눈 뜬 상태로 누워 있었다. 뒤따라온 박○성의 어머니가 물을 입에 넣어주었는데 기척이 없었고, “억울하지만 눈을 감아라, 눈을 감아라.” 하면서 손으로 눈을 감겨주었다. 오빠(박○○)가 집안사람들과 박○성의 시신을 모셔 와 산소를 썼다. 참고인은 밭에 갈 때마다 뽕나무에 박힌 총알을 보며 박○성의 죽음을 떠올렸고, 사람들은 “일본에 있었으면 살았을 텐데 안타깝다.”라고 하였다.

참고인 박○○(1938년생, 조카)의 전문진술<sup>116)</sup>에 따르면, 박○성은 자기 밭에 일하러 갔다가 개포지서장과 경찰 앞잡이 김○○(또는 김○○)에게 ‘○○ 어른’과 함께 총살되었다. 박○성은 잘못된 것 없이 오해받았고, 김○○(또는 김○○)는 예천을 떠나 타지에서 살다가 20~30년 전에 사망했다.

참고인 박○○(1942년생,<sup>117)</sup> 이웃)의 전문진술<sup>118)</sup>에 따르면, 박○성은 연세 많은 어른이었고 농사 외에 다른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 전쟁 전에 시골의 외딴집은 밤에 좌익 모임을 한다며 다 뜯어버렸는데, 1949년 7월에 금동 뒷산에서 예천 남로당 책임자 정○○ 등이 경찰에 의해 총살되는 일이 있었다.<sup>119)</sup> 이후 박○성은 밭에 일하러 나갔다가 박○성의 밭 건너편에 무슨 아지트가 있어서 왔던 경찰에 의해 총살되었다.

제적등본에 박○성이 “1973년 4월 28일 5시 예천군 개포면 금동 178번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sup>120)</sup>

죽보에 박○성이 ‘경인(庚寅)(1950년) 음력 7월 13일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sup>121)</sup>

『제4대국회보고서』에 박○성에 대해 “[피살연월일] 1949년 음력 7월 13일 [피살장소] 예천군 개포면 금동(후곡, 방기) [경찰관계] 당시 본 면 지서 주임 김○○, 특공대 대장 김○○, 본 면 지서 차석 강○○ 3인이 당자를 총살함(신고인 박○○, 양(養) 장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sup>122)</sup>

『피해자현황조사』에 “박○구,<sup>123)</sup> 금리, 43세, 남성, 농업, 1949년 음력 7월 13일 개포면 금리에서 총살, 가해자-경찰”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희생시기와 관련된 기록 중 사건 발생 이후 가장 근접한 시기에 작성된 『제4대국회보고서』에 1949년으로 기록되었고, 함께 희생된 한○○의 『제4대국회보고서』<sup>124)</sup>에도 1949년 음력 7월 13일

116) 참고인 박○○은 사건 내용을 할머니(박○성의 어머니)에게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다. 참고인 박○○ 진술조서(2024. 5. 17.).

117) 실제로는 1941년생이라고 진술했다. 참고인 박○○ 진술조서(2023. 7. 6.).

118) 참고인 박○○은 진실규명대상자 박○성의 희생 사실에 대해 동네 이웃들에게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다. 참고인 박○○ 진술조서(2023. 7. 6.).

119) 예천군 관하 아지트 급습, 군책 등 5명 사살. 『영남일보』, 1949. 7. 7.; 남로당원 4명 피살. 『조선중앙일보』, 1949. 7. 10.

120) 사망신고일은 서기 1973년 5월 6일이고, 신고자는 동거친족 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제적등본의 사망일이 신청인의 진술에 따른 사망일과 다른 이유에 대해 신청인 박○호는 ‘잘못 기재된 것 같다.’라고 진술했다. 신청인 박○호 진술조서(2022. 4. 20.).

121) 생(生) 무신(戊申) 4월 15일, 졸(卒) 경인(庚寅) 7월 13일, 묘(墓) 옥녀산(玉女山) 평파(平坡) 북(北) 병좌(丙坐), 유(有) 상석(床石) 『함양박씨치암공파세보』, 2005.

122) 「양민피살자신고서」, 『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6-10)』, 1960, 66쪽.

123) 박○성의 족보 이름은 박노구(朴魯龜)이다. 『함양박씨치암공파세보』, 2005.

124) 「양민피살자신고서」, 『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6-10)』, 1960, 63쪽.

(양력 8월 7일)로 기재된 것에 따라 박○성의 희생시기는 1949년 8월 7일로 판단된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1) 신청인 박○호가 박○성의 희생 경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2) 참고인 박○○가 박○성의 사망에 대하여 목격한 바에 따라 진술한 내용이 신청인 박○호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3) 족보에서 확인되는 박○성의 사망일자(음력 7월 13일)와 그에 따른 박○성의 제삿날이 일치하는 점, (4) 『제4대국회보고서』에 박○성과 동반희생자 한○○의 희생이 신고된 점, (5) 『피해자현황조사』에 박○성과 한○○의 희생이 기록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진실규명대상자 박○성(2다-7864)은 경북 상주·예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1949년 8월 7일 경찰에 의해 개포면 금동에서 희생되었다고 판단된다.

## 나. 희생 장소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 『제4대국회보고서』, 『2007 기초사실조사표』 등을 검토해 파악한 주요 희생 현장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의 희생 장소는 경북 상주시의 (1) 내서면 낙서리 (2) 상주읍 계산리(현 계산동)와 경북 예천군의 (1) 용궁면 월오리 (2) 개포면 금동(현 금리)로 판단된다.

〈지도 1〉 경북 상주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희생 장소



〈지도 2〉 경북 예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희생 장소



### 3. 사건 조사 결과

#### 가. 희생자 수와 신원

진실화해위원회는 『제4대국회보고서』, 참고인 진술, 제적등본, 족보, 『2007 기초사실조사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희생자 총 7명의 신원을 확인하였다. 희생자 신원 확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제4대국회보고서』, 『2007 기초사실조사표』, 제적등본 등 공적 기록을 통해 희생자의 신원이 확인되고, 신청인과 참고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일 경우 희생자로 확인했다.
- 2) 위와 같은 기록이 없는 경우, 족보, 제사, 시신 수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과 참고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희생자로 확인했다.

조사 결과, 이 사건의 희생자 7명의 신원과 확인 근거는 <표 3>과 같다.

〈표 3〉 희생자 신원과 확인 근거

| 연번  | 사건<br>번호<br>(2다-) | 진실규명<br>대상자                    |                    |               | 판단 근거                                      |                                  |          |                  |          |                           |                         |                                                                               |              |               | 판단<br>결과    |                         |
|-----|-------------------|--------------------------------|--------------------|---------------|--------------------------------------------|----------------------------------|----------|------------------|----------|---------------------------|-------------------------|-------------------------------------------------------------------------------|--------------|---------------|-------------|-------------------------|
|     |                   |                                |                    |               | 기록                                         |                                  |          |                  |          | 참고인 진술                    |                         | 사신<br>수습                                                                      | 제사           | 기타            |             |                         |
|     |                   | 성명<br>(한자,<br>성별,<br>출생<br>연도) | 거주지<br>(읍면<br>· 리) | 직업<br>·<br>경력 | 제적<br>등본<br>(사망<br>일자,<br>장소)              | 족보<br>(사망<br>일자,<br>제작<br>연도)    | 행형<br>기록 | 제4대<br>국회<br>보고서 | 경찰<br>기록 | 기타<br>(1기<br>진실화해<br>위원회) | 목격<br>(출생<br>연도,<br>관계) |                                                                               |              |               |             | 전문<br>(출생<br>연도,<br>관계) |
| 상주시 |                   |                                |                    |               |                                            |                                  |          |                  |          |                           |                         |                                                                               |              |               |             |                         |
| 1   | 2724              | 김○기<br>(金○己,<br>남,<br>1897)    | 내서면<br>·<br>연원리    | 농업            | 1950.<br>8. 3.<br>·<br>본적지                 | -                                | -        | -                | -        | -                         | 김○○<br>(1942,<br>이웃)    | 김○○<br>(1963,<br>손자)<br>·<br>김○○<br>(1971,<br>외손자)                            | ○            | 8.17.<br>(음)  | -           | 희생<br>확인                |
| 2   |                   | 전○옥<br>(全○玉,<br>여,<br>1910)    | 내서면<br>·<br>연원리    | 상업            | 1950.<br>8. 3.<br>·<br>본적지                 | -                                | -        | -                | -        | -                         |                         | ○                                                                             | 8.17.<br>(음) | -             | 희생<br>확인    |                         |
| 3   | 16643             | 김○규<br>(金○圭,<br>남,<br>1921)    | 상주읍<br>·<br>죽전리    | 교사            | 1950.<br>8. 23.<br>·<br>상주읍<br>화산리<br>미상번지 | 1950.<br>8. 23.<br>(1974)        | -        | ○                | -        | -                         | 김○○<br>(1946,<br>딸)     | 김○○<br>(1932,<br>친척)                                                          | ○            | 10.3.         | 학적부,<br>통지표 | 희생<br>확인                |
| 예천군 |                   |                                |                    |               |                                            |                                  |          |                  |          |                           |                         |                                                                               |              |               |             |                         |
| 4   | 300-1             | 박○대<br>(朴○大,<br>남,<br>1921)    | 용궁면<br>·<br>월오리    | 농업            | 1950.<br>7. 20.<br>·<br>용궁면<br>월오리<br>204  | 9. 10.<br>(1984)                 | -        | ○                | -        | 피해자<br>현황<br>조사           | -                       | 박○○<br>(1936,<br>조카)<br>·<br>안○○<br>(1941,<br>이웃)<br>·<br>김○○<br>(70대,<br>이웃) | -            | -             | -           | 희생<br>확인                |
| 5   | 1041              | 안○목<br>(安○睦,<br>남,<br>1892)    | 용궁면<br>·<br>월오리    | 농업            | 1952.<br>6. 26.<br>·<br>용궁면<br>월오리<br>1151 | 기축<br>(1949)<br>3. 1.<br>(1956)  | -        | ○                | -        | 피해자<br>현황<br>조사           | 안○○<br>(1940,<br>이웃)    | 안○○<br>(1941,<br>이웃)<br>·<br>안○○<br>(1968,<br>손자)                             | ○            | 2. 그름<br>(음)  | -           | 희생<br>확인                |
| 6   | 1041              | 안○진<br>(安○鎭,<br>남,<br>1932)    | 용궁면<br>·<br>월오리    | 농업            | 1952.<br>7. 1.<br>·<br>용궁면<br>월오리<br>1151  | 기축<br>(1949)<br>3. 1.<br>(1956)  | -        | ○                | -        | 피해자<br>현황<br>조사           | 안○○<br>(1940,<br>이웃)    | 안○○<br>(1941,<br>이웃)<br>·<br>안○○<br>(1968,<br>조카)                             | ○            | 2. 그름<br>(음)  | -           | 희생<br>확인                |
| 7   | 7864              | 박○성<br>(朴○成,<br>남,<br>1907)    | 개포면<br>·<br>금동     | 농업            | 1973.<br>4. 28.<br>·<br>개포면<br>금동 178      | 경인<br>(1950)<br>7. 13.<br>(2005) | -        | ○                | -        | 피해자<br>현황<br>조사           | 박○○○<br>(1942,<br>딸)    | 박○○<br>(1938,<br>조카)<br>·<br>박○○<br>(1942,<br>이웃)                             | ○            | 7. 13.<br>(음) | -           | 희생<br>확인                |

## 나. 희생자의 특징

이 사건의 희생자로 신원이 확인된 7명의 거주지별, 성별, 연령별, 직업별 분포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경북 상주시·예천군 희생자 거주지(읍면동)별 분포

| 거주지      | 상주시  |      | 예천군  |      | 합계  |
|----------|------|------|------|------|-----|
|          | 연원동  | 죽전동  | 용궁면  | 개포면  |     |
| 희생자 수(명) | 2    | 1    | 3    | 1    | 7   |
| 비율(%)    | 28.6 | 14.3 | 42.8 | 14.3 | 100 |

〈표 5〉 희생자 성별 분포

| 성별       | 남    | 여    | 합계  |
|----------|------|------|-----|
| 희생자 수(명) | 6    | 1    | 7   |
| 비율(%)    | 85.7 | 14.3 | 100 |

〈표 6〉 희생자 연령별 분포

| 연령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이상 | 합계  |
|----------|------|------|-----|------|--------|-----|
| 희생자 수(명) | 1    | 2    | 0   | 2    | 2      | 7   |
| 비율(%)    | 14.3 | 28.6 | 0   | 28.6 | 28.6   | 100 |

〈표 7〉 희생자 직업별 분포

| 직업       | 농업   | 상업   | 교사   | 합계  |
|----------|------|------|------|-----|
| 희생자 수(명) | 5    | 1    | 1    | 7   |
| 비율(%)    | 71.4 | 14.3 | 14.3 | 100 |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과, 상주지역에서 이 사건의 희생자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연원동(2명, 28.6%)이었고 예천지역에서는 용궁면(3명, 42.8%)이었다. 이 사건의 희생자는 대부분 남성(6명, 85.7%)이었으며 여성 희생자 역시 1명 확인되었다. 희생자의 연령은 4·50대(각각 28.6%)가 많았고, 10대도 있었다. 희생자의 과반(5명, 71.4%)이 농업에 종사했으며 나머지 2명은 상업, 교직에 종사하고 있었다.

## 다. 가해 주체

### 1) 상주군(현 상주시)

신청인 김○분과 참고인 김○○는 이 사건의 가해 주체로 국군을 지목했다. 사건 발생 당시에 해당 군인의 소속을 알지 못했지만, 「1사단 12보병연대 부대상보」에 “1950. 9. 26. ~ 10. 6.까지 제1사단 12보병연대가 선산, 옥산을 경유 상주 천리, 가천리로 전진하였다.”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진실규명대상자의 희생시기에 상주지역에 주둔하였던 부대를 제12연대로 특정할 수 있었다. 『제4대국회보고서』(1960)의 내용도 신청인들의 진술에 부합한다. 『제4대국회보고서』에 기재된 희생자 중 김○기, 전○옥과 같은 날 피살된 김○○,<sup>125)</sup> 김○○,<sup>126)</sup> 전○○<sup>127)</sup>도 가해자가 ‘국군 제12연대’로 기록되어 있다.

이 사건의 참고인 김○○는 희생자 김○규의 연행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며, 당시 네다섯 명이 김○규를 연행하러 왔고 모자를 쓰거나 한 차림새는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김○규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살된 김○○도 가해자가 ‘경찰’<sup>128)</sup>로 기록되어 있다.

신청인들의 진술과 『제4대국회보고서』 등의 기록을 종합해 볼 때 상주지역에서 발생한 경북 상주·예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가해 주체는 국군 제1사단 제12연대 소속 군인과 상주경찰서 경찰로 판단된다. 이 사건의 발생 시기인 1950년 9월 말부터 1950년 10월까지 제12연대장은 김○곤(金○坤, 1950. 6. 26. ~ 1951. 5. 28.), 상주경찰서장은 제12대 김○현(金○鉉, 1950. 9. 23.~1952. 3. 24.)이다.<sup>129)</sup>

### 2) 예천군

신청인 안○진을 비롯한 예천지역 신청인들 역시 이 사건의 가해 주체로 예천경찰서를 지목했다. 당시 예천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희생자를 거주지에서 총살하기도 했고, 연행하는 도중에 총살하기도 하였다.

『제4대국회보고서』(1960)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경위의 신고 내용이 확인된다. 예천군에서는 한국전쟁을 전후 시기에 개포면에서는 “지서주임 김○○, 특공대장 김○○, 고○○, 이○○ 등에 의해 지역 주민이 마을 백사장에서 총살되었다.”라는 내용이 신고되어 있다. “아무 이유 없이 밤 12경에 지서주임 경사 김○○와 특공대 2명이 와서 가자고 하더니 금동 앞 논에 세워놓고 사살하였음. 그

125) 「양민피살자신고서」, 『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6-9)』, 1960, 68쪽.

126) 「양민피살자신고서」, 『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6-9)』, 1960, 69쪽.

127) 「양민피살자신고서」, 『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6-9)』, 1960, 70쪽.

128) “직업상 인민군을 치료했던바 아군이 복귀하여 경찰에게 자수하면 만사를 용서한다 하여 자수하러 경찰에 간 이후 피살당함.” 「양민피살자신고서」, 『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6-9)』, 1960, 132쪽.

129) 내무부 치안국, 『한국경찰사』 II, 1973, 1,387쪽.

후 김○○가 죽었다고 자랑까지 하였음.”, “죄 없는 사람은 보도연맹에 가입하라 하여 근거없이 가입할 수 없다 하니 신고인 본인을 특공대와 지서주임 김○○가 와서 나체를 만들어 놓고 구타하기에 보도연맹에 가입 후, 특공대 3명이 와서 회합이 있다고 하여 가자 한 후 상기 장소(용궁면 산택동)에서 사살하였다.”<sup>130)</sup>라는 신고 내용도 확인되어 지서와 특공대는 국민보도연맹 희생 사건에도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인 및 참고인들의 진술과 『제4대국회보고서』(1960)의 내용으로 볼 때 예천지역에서 발생한 경북 상주·예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가해 주체는 예천경찰서 경찰로 판단된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천경찰서는 좌익 혐의자들은 물론 그에 협력했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을 조사나 재판과 같은 적법절차 없이 희생시켰다.<sup>131)</sup> 예천지역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1949년 3월부터 1949년 8월까지 예천경찰서장을 역임한 사람은 제10대 윤○완(尹○完, 1948. 11. 22.~1950. 5. 6.)이다.<sup>132)</sup>

## 라. 가해의 위법성 여부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좌익활동혐의자, 부역혐의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령으로는 「(구)형법」, 「국방경비법」, 「국가보안법」,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sup>133)</sup>이 있었다. 이 중 「국방경비법」을 위반하면 군사법원에서, 「(구)형법」, 「국가보안법」,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을 위반하면 일반법원에서 재판받아 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실체적, 절차적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희생자들에게는 위와 같은 법규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 사건의 희생자들은 사건 발생 당시 적법한 심사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살해되었다. 희생자들의 행형기록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과 관련한 재판 등의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비록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국가 기관인 군과 경찰이 비무장·무저항의 민간인을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 신체의 자유, 영장주의 등 적법절차 원칙,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sup>134)</sup>

130) 「양민피살자신고서」, 『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6-10)』, 1960, 57쪽.

131) 1기 진실화해위원회, 「예천·문경 민간인 희생 사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4권』, 2010.

132) 내무부 치안국, 『한국경찰사』 II, 1973, 1,389쪽.

133)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은 1950. 6. 25. 제정·시행되었다. 제4조에서 ‘비상사태에 승하여 죄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제9조에서 ‘본령에 규정한 죄의 심판은 단심으로 하고 지방법원 또는 동지원의 단독판사가 행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1952. 9. 9. 헌법위원회는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제9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2조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이고, 헌법 제76조 제2항의 최고법원과 하급법원의 조직을 규정한 법원조직법은 3심제의 대원칙을 확립하여 무릇 소송이 최종심으로서 대법원의 심판을 받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2심제인 행정소송이 또한 그러하고 단심제인 선거소송까지도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심판을 받게 한 각 법률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최종심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에 통합귀 일케 함이 헌법 제22조 및 제76조 제2항의 대정신이다. 그런데 긴급명령으로서 법률의 효력을 가진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 특별조치령 제9조는 국민이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심판을 받는 기본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헌법 제22조, 제76조의 정신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10년사』, 1998, 20~21쪽.

134) 「제헌헌법」(헌법 제1호, 1948. 7. 17. 제정)

또한, 이는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 8. 12. 제네바협약」을 위반한 행위이다.<sup>135)</sup> 특히 제네바협약 제3조는 무력 충돌의 경우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생명 및 신체에 대한 폭행, 특히 모든 종류의 살인, 상해, 학대 및 고문, 인질로 잡는 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 특히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대우, 모든 법적 보장을 부여하는 정상적으로 구성된 법원의 사전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는 판결의 언도 및 형의 집행을 금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마. 유족의 피해

경북 상주·예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이후 이 사건의 유족들은 가장을 잃고 경제적 어려움과 좌익 혐의자의 가족이라는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고통받으며 살아왔다. 희생자 대부분이 성인 남성이었고 이들은 각 가정의 가장이었기 때문에 당장 겪어야 하는 경제적 곤궁함은 한국전쟁 및 전후 복구기의 빈곤과 맞물려 유족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주었다.

희생자들의 자녀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의 기회를 상실하고 일찍이 생업에 종사하며 가족을 부양해야 했다. 살던 곳에 안착하지 못하고 외지로 떠나 유족들의 미래도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다.<sup>136)</sup>

유족들은 전쟁 경험, 시신 목격, 가족 상실, 희생자에 대한 예를 갖추지 못했다는 자책 등으로 그 시기에 보편적으로 겪는 재난 이상의 트라우마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유족들을 가장 괴롭힌 것은 연좌제로 인한 사회적 가해였다. 희생자의 자녀들은 어릴 적부터 주변에서 “연좌제 대상”이라는 낙인이 찍혀 조심스럽게 살며, 직업 선택의 제한을 받았다. 일부 유족은 온전한 시민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우익 정당에 들어가 열심히 활동했다.<sup>137)</sup>

이렇듯 경북 상주·예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유족들은 희생자들의 죽음 이후 경제적 곤궁함을 겪으며 사회적 냉대와 정신적 트라우마로 고통받았다. 그리고 이러한 유족들을 보호해야 할 국가는 오히려 이들을 감시하고 통제했고, 일부는 추가적인 희생을 겪기도 했다. 이 사건 발생 이후 제대로 된 경위도 알지 못한 채 70여 년 동안 이러한 고통과 차별을 견뎌야 했던 유족들은 희생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피해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국가에 요구하고 있다.

135) Geneva Convention to the Protection of Civilian Persons in Time of War of August 12, 1949.

136) 신청인 김○분 진술조서(2022. 8. 9.); 참고인 안○○ 진술조서(2024. 5. 14.).

137) 참고인 김○○ 진술조서(2023. 6. 19.); 참고인 안○○ 진술조서(2024. 5. 14.).

### Ⅲ. 결론 및 권고 사항

#### 1. 결론

- 가. 한국전쟁 발발을 전후한 1949년 3월부터 1950년 10월까지 경북 상주·예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희생자들은 상주 및 예천지역 관할 경찰서 경찰과 국군에 의해 연행된 후 상주지역의 내서면 낙서리 야산, 상주읍 계산리(현 계산동)와 예천지역의 용궁면 월오리, 개포면 금동(현 금리) 등에서 희생되었다.
- 나.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을 진실규명하여 희생자 총 7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다음과 같다.
- 1) 경북 상주지역에 김○기(金○己, 2다-2724), 전○옥(全○玉, 2다-2724), 김○규(金○圭, 2다-16643) 등 3명.
  - 2) 경북 예천지역에 박○대(朴○大, 2다-300-1), 안○목(安○睦, 2다-1041), 안○진(安○鎭, 2다-1041), 박○성(朴○成, 2다-7864) 등 4명.
- 다. 이 사건의 희생자들은 모두 비무장 민간인들이었으며 한국전쟁 이전 좌익 협조자로 분류된 사람 또는 상주·예천지역의 인민군 점령기에 인민군에게 협조했다는 혐의를 받은 사람들이었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남성(85.7%)이었으며 40~50대(각각 28.6%)가 다수를 차지했다. 상당수가 농업(71.4%)에 종사했으며 거주지 별로는 예천군의 용궁면(예천군 전체 희생자의 75%) 거주자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라. 이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 주체는 상주경찰서 및 예천경찰서 소속 경찰과 국군 제1사단 제12연대 등이다. 따라서 민간인 불법 살해의 최종적인 책임은 이들 군·경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국가에 귀속된다.
- 마. 경북 상주·예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일차적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군·경찰이 관할지역의 비무장·무저항 민간인들을 불법 살해한 민간인 희생 사건이다. 군·경이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한 채 범죄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민간인들을 적법절차 없이 살해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 2. 권고 사항

이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국가는 민간인을 적법절차 없이 살해하고 유족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 희생자와 유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청, 국방부 등 책임이 있는 기관은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

### 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국가는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다. 추모 사업 지원 등 후속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화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희생자에 대한 추모제와 위령비 건립 등 추모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유해발굴 및 안치, 증언 채록 등 후속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라.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식기록 정정

제적등본 등 공적 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고 유족들이 정정을 원할 경우, 관련 국가 기관은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기록에 대한 정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마. 역사기록 반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역사 기록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기록이 잘못 기술된 경우는 이를 올바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 바. 평화인권교육 실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군인·경찰·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전시(戰時) 민간인 보호에 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미래세대인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평화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붙임

〈붙임(표) 1〉 신청인 주요 진술 내용

| 연번                      | 사건<br>번호<br>(2다-) | 신청인<br>(출생<br>연도) | 진실규명<br>대상자<br>(한자명,<br>(출생연도,<br>관계)                               | 진술일<br>진술장소<br>·<br>진술형태           | 목격<br>·<br>전문             | 주요 진술                                                                                                                                                                                                                                                                                                                                                                                                                                                                                                                                                                                                                                                                                                                                                                                                                                                                                                                                     |
|-------------------------|-------------------|-------------------|---------------------------------------------------------------------|------------------------------------|---------------------------|-------------------------------------------------------------------------------------------------------------------------------------------------------------------------------------------------------------------------------------------------------------------------------------------------------------------------------------------------------------------------------------------------------------------------------------------------------------------------------------------------------------------------------------------------------------------------------------------------------------------------------------------------------------------------------------------------------------------------------------------------------------------------------------------------------------------------------------------------------------------------------------------------------------------------------------------|
| 상주시(신청인 2명, 진실규명대상자 3명) |                   |                   |                                                                     |                                    |                           |                                                                                                                                                                                                                                                                                                                                                                                                                                                                                                                                                                                                                                                                                                                                                                                                                                                                                                                                           |
| 연원동(신청인 1명, 진실규명대상자 2명) |                   |                   |                                                                     |                                    |                           |                                                                                                                                                                                                                                                                                                                                                                                                                                                                                                                                                                                                                                                                                                                                                                                                                                                                                                                                           |
| 1                       | 2724              | 김○분<br>(1941)     | 김○기<br>(金○己,<br>1892,<br>아버지)<br>·<br>전○옥<br>(全○玉,<br>1910,<br>어머니) | 2022. 8. 9.<br>상주시청<br>·<br>진술조서   | 목격<br>(연행,<br>시신,<br>산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아버지 김○기, 어머니 전○옥(상주군 내서면 연원리)은 한국전쟁 직후 이웃 동네 사는 강○○ 일가가 복진하는 국군 선발대의 차를 가로막으며 빨갱이가 있다고 거짓 신고를 하여 국군 트럭에 실려 끌려가 희생됨.</li><li>●아버지는 외아들로 태어나 농사를 지으며 어머니의 장사(떡, 목)를 도우셨음.</li><li>●아버지와 어머니가 국군 트럭에 실려 가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고 어머니께서 트럭에서 오지 말라고 손짓했음. 당시에는 부모님께서 연행되어 가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음.</li><li>●트럭에 실려 연행된 사람 중에는 마을에 사는 주민 1명이 더 있었으며 임신 중이었음.</li><li>●같은 마을에 살았던 김○○(81세, 연원동 거주)가 아버지, 어머니께서 연행되는 것을 목격하였음.</li><li>●두 분이 연행되고 얼마 후 낙서리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동네 어르신과 아버지 친구분께서 두 분의 시신을 수습해 주었음.</li><li>●희생 당시 두 분의 시신이 옆어져 있었고 어머니의 배에는 총상의 흔적이 있었으며, 입안에 흙을 한 입 물고 있었음.</li><li>●묘지는 희생 장소(낙서리 358-1) 건너편에 있는 산에 있으며 합장하였음.</li><li>●강○○ 일가와 특별한 원한 관계는 없으며 동네 주민에 따르면 아버지, 어머니는 법 없이도 사는 착한 사람이었다고 함.</li><li>●강○○ 일가는 우리 집과 마찬가지로 떡, 목을 팔았고, 큰오빠와 그 집 딸이 혼담이 오갔으나 할아버지께서 반대하셨다고 함.</li><li>●동네 어르신에 따르면 큰오빠(김○○)가 당시 누군가에게 보도연맹 가입을 권유받고 한동안 피해 다니며 생활했다고 함.</li><li>●제사는 음력 8월 17일에 지내고 있음.</li></ul> |
| 죽전동(신청인 1명, 진실규명대상자 1명) |                   |                   |                                                                     |                                    |                           |                                                                                                                                                                                                                                                                                                                                                                                                                                                                                                                                                                                                                                                                                                                                                                                                                                                                                                                                           |
| 2                       | 16643             | 김○태<br>(1948)     | 김○규<br>(金○圭,<br>1921,<br>아버지)                                       | 2023. 4. 7.<br>신청인 자택<br>·<br>진술조서 | 전문<br>(할머니,<br>누나,<br>이웃)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진실규명대상자 김○규(金○圭, 1921년생, 교사)는 1950년 음력 8월 23일에 집에서 경찰에 연행되어 상주 화장터 인근에서 희생되었음.</li><li>●아버지 김○규는 상주 죽전리의 주민으로 상주보통학교와 대구사범 5년제 심상과를 졸업한 후 상산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하셨음.</li><li>●전쟁이 나서 피난을 가려고 낙동강까지 갔으나, 어머니는 만삭이고 짐을 실은 자전거를 잃어버린 데다가 아이(신청인)가 너무 울어서 불길하다며 집으로 돌아왔다고 함. 어머니는 음력 8월 1일에 외가에서 막넛 동생 김○○을 낳으셨음.</li><li>●할아버지는 장날 전날에 1차로 붙잡혀 간 사람들이</li></ul>                                                                                                                                                                                                                                                                                                                                                                                                                                                                                                                                               |

| 연번                      | 사건<br>번호<br>(2다-) | 신청인<br>(출생<br>연도) | 진실규명<br>대상자<br>(한자명,<br>(출생연도,<br>관계)              | 진술일<br>진술장소<br>·<br>진술형태                      | 목격<br>·<br>전문            | 주요 진술                                                                                                                                                                                                                                                                                                                                                                                                                                                                                                                                                                                                                                                                                                                                                                                                      |
|-------------------------|-------------------|-------------------|----------------------------------------------------|-----------------------------------------------|--------------------------|------------------------------------------------------------------------------------------------------------------------------------------------------------------------------------------------------------------------------------------------------------------------------------------------------------------------------------------------------------------------------------------------------------------------------------------------------------------------------------------------------------------------------------------------------------------------------------------------------------------------------------------------------------------------------------------------------------------------------------------------------------------------------------------------------------|
|                         |                   |                   |                                                    |                                               |                          | <p>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곤 아버지에게 돈을 주며 처가에 가서 피해 있으라고 하셨는데, 아버지는 잘못된 것도 없는데 안 떠난다고 실랑이를 한 적이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막내가 태어나고 삼칠일이 지나기 전, 사복 차림 아저씨 서너 명이 집으로 찾아와 아버지의 양옆에 서서 아버지를 데려가는데, 작은누나 김○○에게 ‘곧 돌아올게’라고 하였음.</li> <li>•잡혀간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할아버지는 집에서 5km 떨어진 화장장 쪽에서 아버지의 시신을 찾아 지게에 지고 와서 삼일장을 지내고 산소를 썼음.</li> <li>•(인민군이 와서 방을 달라고 했을 때는 거절하여 옆집으로 간 적이 있고) 아버지 사후 미군 3~4명이 우리 집 마당에서 생활했음.</li> <li>•제적등본에 ‘4283년 8월 23일 사망’, 족보에 ‘경인년 8월 23일 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사는 10월 3일에 지냄.</li> <li>* 1950년 양력 10월 3일, 음력 8월 22일</li> <li>•할아버지는 화병으로 3년 후 돌아가시고, 할머니는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네가 애를 가져 내 아들이 피난 못 가 죽었다.’, ‘네가 태어나는 바람에 내 아들이 죽었다.’라고 원망하였고, 어머니는 90세로 돌아가실 때까지 비행기 소리만 나면 무서워하셨음. (조사관 주: PTSD 증상 중 과각성, 재경험에 해당)</li> <li>•신청인은 1948년생으로 할머니, 큰누나, 작은누나, 이웃에게 사건 내용을 전해 들음.</li> </ul> |
| 예천군(신청인 3명, 진실규명대상자 4명) |                   |                   |                                                    |                                               |                          |                                                                                                                                                                                                                                                                                                                                                                                                                                                                                                                                                                                                                                                                                                                                                                                                            |
| 용궁면(신청인 2명, 진실규명대상자 3명) |                   |                   |                                                    |                                               |                          |                                                                                                                                                                                                                                                                                                                                                                                                                                                                                                                                                                                                                                                                                                                                                                                                            |
| 3                       | 300-1             | 박○봉               | 박○대<br>(朴○大,<br>1921,<br>삼촌)                       | 2022. 7. 1.<br>예천군청 4층<br>영상회의실<br>·<br>진술조서  | 전문<br>(아버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삼촌 박○대(경북 예천군 용궁면 월오리)는 한국전쟁 전 경찰지서의 소집에 응한 후 희생되었고, 얼마 후 형 박○○은 자택에서 강제 연행되어 희생됨.</li> <li>•삼촌은 농사를 지었고 형은 용궁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이었음. 삼촌과 형을 살해한 사람들은 군복을 입고 칼을 찬 사람들이었으며, 당시 삼촌, 형과 함께 마을 젊은 청년들이 강제 연행되어 희생되었다고 함.</li> <li>•당시 경찰의 소집을 받고 나간 청년들이 모두 사살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과 같이 사건 현장에서 시신을 수습하였음.</li> <li>•당시 삼촌의 시신은 경비가 삼엄하여 임시로 야산에 매장해 놓고 나중에 제대로 수습하고자 하였으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음. 형의 시신은 용궁면 소재 공동묘지에 매장하였다가 이후 문경시 영순면 오룡리로 이장함.</li> <li>•삼촌의 제사는 아버지 생전에 지냈으나 현재는 지내고 있지 않음(형의 경우, 기제사는 지내고 있지 않으며, 추석 명절 때만 지냄).</li> </ul>                                                                                                                                                                                                                                   |
| 4                       | 1041              | 안○진<br>(1940)     | 안○목<br>(安○睦,<br>1892,<br>아버지)<br>·<br>안○진<br>(安○鎭, | 2022. 6. 30.<br>예천군청 4층<br>영상회의실<br>·<br>진술조서 | 목격<br>(희생,<br>연행,<br>시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버지 안○목(경북 예천군 용궁면 월오리)은 한국전쟁 전 소에게 줄 죽을 끓이려고 여물통을 들고 오다가 집으로 찾아온 사복 차림의 경찰 또는 군인에게 총살되었음. 당시 방 안에 있던 형 안○진도 이들에게 바로 끌려가 가래미(동네 이름) 어귀의 산모퉁이 개울가에서 총살됨.</li> <li>•당시 진술인(장평초등학교 1학년)은 집에서 어머니와</li> </ul>                                                                                                                                                                                                                                                                                                                                                                                                                                                                                                                                                          |

| 연번                      | 사건<br>번호<br>(2다-) | 신청인<br>(출생<br>연도) | 진실규명<br>대상자<br>(한자명,<br>(출생연도,<br>관계) | 진술일<br>진술장소<br>·<br>진술형태                     | 목적<br>·<br>전문                     | 주요 진술                                                                                                                                                                                                                                                                                                                                                                                                                                                                                                                                                        |
|-------------------------|-------------------|-------------------|---------------------------------------|----------------------------------------------|-----------------------------------|--------------------------------------------------------------------------------------------------------------------------------------------------------------------------------------------------------------------------------------------------------------------------------------------------------------------------------------------------------------------------------------------------------------------------------------------------------------------------------------------------------------------------------------------------------------|
|                         |                   |                   | 1932,<br>형)                           |                                              |                                   | 함께, 총살당한 아버지와 사복 차림의 경찰 또는 군인에게 연행되는 형의 모습을 직접 목격하였음.<br>•당시 동네 어른들이 형의 시신을 수습하여 집으로 왔고, 지금 사는 마을에 아버지와 함께 모셨음.<br>•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동네 어른들이 집안 농사일을 도와주셨으며, 진술인은 마을 어른들로부터 '아버지께서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라는 말과 형이 머리도 좋고 한문을 많이 배워 필적이 아주 좋았다는 말을 들었음.<br>•아버지와 형의 제사는 음력 2월 그믐에 지냄(족보에는 아버지, 형 모두 사망 일자가 기축년 3월 1일로 기재됨).                                                                                                                                                                                                                                                 |
|                         |                   |                   |                                       | 2024. 5. 14.<br>희생 장소<br>·<br>면담보고           | 목적<br>(희생,<br>연행,<br>시신)          | •사건 당시 우리 가족은 기천서원 옆에 건물을 지어 살면서 서원을 관리했고, 지금은 복숭아밭이 되어 있음.<br>•진입로가 끝나는 지점에 있는 집이고, 뒷산에 산사람이 살았는데, 서원으로 숨어들거나 양식을 달라고 해서 주는 일이 있었음.<br>•안○○가 아침에 학교 가자며 우리 집에 왔다가 마당에 아버지와 형님의 시신이 가마니에 덮여 있는 것을 보았음.<br>•제사는 둘째 형님 댁에서 지내다가 현재 신청인이 지내고 있음.                                                                                                                                                                                                                                                                                                                |
| 개포면(신청인 1명, 진실규명대상자 1명) |                   |                   |                                       |                                              |                                   |                                                                                                                                                                                                                                                                                                                                                                                                                                                                                                                                                              |
| 5                       | 7864              | 박○호<br>(1948)     | 박○성<br>(朴○成,<br>1909,<br>할아버지)        | 2022. 4. 20.<br>진실화해위원회<br>3조사실<br>·<br>진술조서 | 전문<br>(고모,<br>오촌당숙,<br>친척,<br>이웃) | •할아버지 박○성(족보 이름: 박○구)은 경북 예천군 개포면 금리의 웅기봉 아래에 살며 농사를 지었고, 마을 이장이었음.<br>•할아버지와 이웃 한○○은 1949년 음력 7월 13일(양력 8월 7일) 개포면 금리 뒷골(일명 방기터)에 있는 묵화밭에서 김을 매다가, 개포지서에서 나온 3명에 의해 총을 맞고 함께 사망했음.<br>•개포지서 소속 지서주임 김○○, 특수대장 김○○, 차석 강○○이 마을에서 박○성의 행방을 물어 '방기터에서 묵화밭 김을 매고 있다'라는 답을 듣고 찾아간 후였다고 함.<br>•박○성의 가족, 친척들, 동네 주민들이 묵화밭에서 사망한 박○성의 시신을 수습하여 집 뒤 함양 박씨 문중 산에 안장함.<br>•신청인은 고모로부터 할아버지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한○○의 큰아들이 보도연맹에 연루되었던 이유로 희생되었으리라고 들었음.<br>•가족들은 박○성의 제사를 음력 7월 13일에 지내고 있으며, 한○○의 가족도 같은 날 제사를 지낸다고 들었음.<br>•신청인은 사건 내용을 고모, 오촌 아저씨 박○○, 친척, 동네 사람들에게 전해 들었음. |
|                         |                   |                   |                                       | 2024. 5. 17.<br>희생 장소<br>·<br>면담보고           | 전문<br>(증조할머니,<br>아버지)             | •당시 금동은 85가구 정도 살았는데, 함양 박 씨가 과반이었고, 청주 한 씨도 많이 살았음.<br>•할아버지의 이름은 호적에 박○성, 족보에 박○구로 되어 있음.<br>•할아버지가 1949년에 돌아가신 장소는 '방터', 또는 '방기터'라고 부르는 곳에 있는 밭이며, 당시에는 묵화를 재배했음.<br>•할아버지와 같이 돌아가신 한○○ 씨의 자녀 한○○은 신청인의 친구인데, 참고인 진술을 거부하였음.<br>•신청인은 사건 내용을 아버지, 증조할머니에게 전해 들었음.                                                                                                                                                                                                                                                                                         |

〈붙임(표) 2〉 피해 관련 참고인 주요 진술 내용

| 연번  | 사건<br>번호<br>(2다-) | 진실규명<br>대상자<br>(한자명)              | 참고인                         |                                       |                                     |                                      | 주요 진술                                                                                                                                                                                                                                                                                                                                                                                                                                                                                                                                                                                                                             |
|-----|-------------------|-----------------------------------|-----------------------------|---------------------------------------|-------------------------------------|--------------------------------------|-----------------------------------------------------------------------------------------------------------------------------------------------------------------------------------------------------------------------------------------------------------------------------------------------------------------------------------------------------------------------------------------------------------------------------------------------------------------------------------------------------------------------------------------------------------------------------------------------------------------------------------|
|     |                   |                                   | 성명<br>(한자명,<br>성별,<br>출생연도) | 진실규명<br>대상자와의<br>관계<br>·<br>당시<br>거주지 | 진술일<br>진술장소<br>·<br>진술형태            | 목격<br>·<br>전문                        |                                                                                                                                                                                                                                                                                                                                                                                                                                                                                                                                                                                                                                   |
| 상주시 |                   |                                   |                             |                                       |                                     |                                      |                                                                                                                                                                                                                                                                                                                                                                                                                                                                                                                                                                                                                                   |
| 연원동 |                   |                                   |                             |                                       |                                     |                                      |                                                                                                                                                                                                                                                                                                                                                                                                                                                                                                                                                                                                                                   |
| 1   | 2724              | 김○기<br>(金○己)<br>·<br>전○옥<br>(全○玉) | 김○○<br>(金○○,<br>여,<br>1942) | 이웃<br>·<br>상주시<br>연원동                 | 2023. 6. 23.<br>참고인 자택<br>·<br>진술조서 | 목격<br>(연행,<br>산소)<br>·<br>전문<br>(이웃)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진실규명대상자 김○기, 전○옥은 상주 연원동에 거주하였으며, 군인에 의해 연행되어 희생되었음.</li><li>동네에서 죽은 인민군은 동네 사람들이 산소를 써줄 정도로 인심이 좋았고, 20호 중에 두 집에 희생자가 있었음.</li><li>상주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에 다닐 때, 이장, 구장이 학교에 와서 모두 피난 가라고 하여 피난을 다녀왔음.</li><li>신작로 건너편에 ○분이네 부모님(김○기, 전○옥)이 주막을 하셨는데, 놀자고 갔을 때 집 앞에 국방색 군인 트럭이 있었고 총을 든 군인이 ○분이네 부모님을 태우고 있었음. 우리 진외가의 ○○이 아재네 할매를 데려가려는데 할매가 반항하며 도망을 갖고 만삭인 아지매를 데려갔음.</li><li>그 후 어디에서 모두 총살되었다는 소문이 나서 온 동네가 알았고, 잘못된 것 없이 무슨 말을 전할까 염려 때문에 죽었다고 함.</li><li>○분이네 부모님과 ○○이 아재네 아지매 모두 시신이 수습되어 산소를 썼음. ○○이 아재네 아지매는 애를 낳아 팔베개를 한 채로 발견되었다고 ○○ 아재네 일꾼들의 목격담을 전해 들었음.</li></ul>                 |
| 2   | 2724              | 김○기<br>(金○己)<br>·<br>전○옥<br>(全○玉) | 김○○<br>(金○○,<br>남,<br>1971) | 외손자<br>·<br>출생 전                      | 2023. 9. 23.<br>참고인 자택<br>·<br>진술조서 | 전문<br>(어머니,<br>외삼촌,<br>이웃)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진실규명대상자 김○기와 전○옥은 상주군 내서면 연원동(쑤안마을)에 거주하던 중 군인에 의해 연행되어 낙서리에서 총살되었음.</li><li>전쟁 때 동네 구장이 피난을 가라고 해서였는지 확실치 않으나 동네 사람들이 다 피난을 갔고,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등 가족도 선산대원재라는 곳까지 피난을 다녀왔더니 인민군이 있었다고 함.</li><li>얼마 안 되어 비행기에서 폭격이 떨어져 방공호를 파고 피신했고, 아군선발대가 들어올 때,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임산부를 같이 데려가 낙서리에서 총살하였다고 함.</li><li>외할아버지의 친구들이 현장에 가서 시신을 확인하고 수습하여 산소를 썼음.</li><li>산소에 묘비를 세웠다가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자주 생긴다며 정리해서 없앨 때 등 어머니, 외삼촌, 이웃(연행 목격자 김○○, 임산부 피살자의 친척) 등으로부터 사건 내용을 전해 들었음.</li><li>거주지는 현재 예쓰오일 주유소가 들어서 있고, 사망 장소는 낙서리 385-1번지 일대이고, 산소도 부근에 있으니 현장에 같이 가서 확인하면 됨.</li></ul> <p>* 이후 사망 장소, 묘소를 방문·확인함.</p> |

| 연번  | 사건<br>번호<br>(2다-) | 진실규명<br>대상자<br>(한자명)              | 참고인                         |                                       |                                           |                                                       | 주요 진술                                                                                                                                                                                                                                                                                                                                                                                                                                                                                                                                                                                                                                                                                                                                                      |
|-----|-------------------|-----------------------------------|-----------------------------|---------------------------------------|-------------------------------------------|-------------------------------------------------------|------------------------------------------------------------------------------------------------------------------------------------------------------------------------------------------------------------------------------------------------------------------------------------------------------------------------------------------------------------------------------------------------------------------------------------------------------------------------------------------------------------------------------------------------------------------------------------------------------------------------------------------------------------------------------------------------------------------------------------------------------------|
|     |                   |                                   | 성명<br>(한자명,<br>성별,<br>출생연도) | 진실규명<br>대상자와의<br>관계<br>·<br>당시<br>거주지 | 진술일<br>·<br>진술장소<br>·<br>진술형태             | 목적<br>·<br>전문                                         |                                                                                                                                                                                                                                                                                                                                                                                                                                                                                                                                                                                                                                                                                                                                                            |
| 3   | 2724              | 김○기<br>(金○己)<br>·<br>전○옥<br>(全○玉) | 김○○<br>(金○○,<br>남,<br>1963) | 손자<br>·<br>출생 전                       | 2024. 5. 18.<br>참고인 자택<br>·<br>통화보고서      | 전문<br>(아버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할아버지와 할머니는 6·25 때 부역혐의로 끌려가서 한날한시에 돌아가셨다고 함.</li> <li>●무슨 조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음.</li> <li>●시신이 수습되어 산소를 썼고, 묘비는 세우지 않았음.</li> <li>●큰아버지 댁에서 제사를 모셨는데, 날짜는 기억나지 않음.</li> <li>●가족들은 살기가 힘들어 고향을 떠났고, 아버지는 일찍 군에 입대했음.</li> <li>●참고인은 중학교 다닐 무렵에 사건 내용을 아버지로부터 전해 들었음.</li> </ul>                                                                                                                                                                                                                                                                                                                                                                                                                                    |
| 죽전동 |                   |                                   |                             |                                       |                                           |                                                       |                                                                                                                                                                                                                                                                                                                                                                                                                                                                                                                                                                                                                                                                                                                                                            |
| 4   | 1664<br>3         | 김○규<br>(金○圭)                      | 김○○<br>(金○○,<br>여,<br>1946) | 딸<br>·<br>상주시<br>죽전동                  | 2023. 6. 19.<br>서울 중구<br>진화위<br>·<br>진술조서 | 목적<br>(연행)<br>·<br>전문<br>(어른들-<br>할머니,<br>어머니,<br>언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진실규명대상자 김○규는 경북 상주 죽전리에 거주하던 중 1950년 음력 8월 23일 집으로 찾아온 사복 차림의 남성들에게 연행된 후 아군에 의해 희생되었음.</li> <li>●아버지 김○규는 상주 죽전리의 주민으로 대구사범을 졸업한 후 상산국민학교 교감으로 재직하셨음.</li> <li>●동네 사람들이 다 피난을 가니 우리도 피난길에 올라 낙동강까지 갔으나, 배가 와도 줄이 밀려서 못 탄 데다가 남동생(신청인)이 하도 울어 어른들이 불길하다며 집으로 돌아왔음.</li> <li>●어머니가 음력 8월 1일에 외가에서 막냇동생 김○○을 낳아 아버지가 보고 오신 후 어느 날 오후,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와 아버지와 함께 나갔음. 찾아온 사람들은 모자 등 제복 차림은 아니었음. 아버지는 나에게 ‘들어가라, 내일 올게’라며 평소처럼 순순히 걸어가셨음.</li> <li>●이후 아군한테 돌아가셨다고 들었고, 아버지의 장례에 왕고모가 오셨음.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시신을 보이지 않으셨고, ‘네 아버지는 피난 못 가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셨음.</li> <li>●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은 1950년 8월 23일이며, 할아버지는 3년 뒤 화병으로 돌아가심.</li> <li>●참고인은 1946년생으로 진실규명대상자가 연행되는 장면과 진실규명대상자의 장례식을 목격하였고, ‘어른들’과 언니에게 사건 내용을 전해 들음.</li> </ul> |
| 5   | 1664<br>3         | 김○규<br>(金○圭)                      | 김○○<br>(金○○,<br>남,<br>1932) | 친척<br>·<br>상주시<br>죽전동                 | 2024. 5. 20.<br>참고인 자택<br>·<br>면담보고서      | 전문<br>(친척,<br>이웃)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주 죽전동에서 전쟁 때 죽은 사람은 참고인의 아저씨뻘인 김○규뿐임.</li> <li>●김○규는 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교편을 잡아 울릉도에서 지내다가 상주 상산국민학교 교감으로 재직했음.</li> <li>●아이 셋에 임신한 부인까지 데리고 피난을 갔다가 낙동강을 건너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온 후 막내딸을 낳았음.</li> <li>●참고인의 가족은 낙동강을 건너 청도, 밀양까지 피난을 다녀왔고, 국군이 상주를 수복했을 때 집으로 왔음.</li> </ul>                                                                                                                                                                                                                                                                                                                                                                                                                                                     |

| 연번  | 사건<br>번호<br>(2다-)  | 진실규명<br>대상자<br>(한자명)                                   | 참고인                         |                                       |                                     |                          | 주요 진술                                                                                                                                                                                                                                                                                                                                                                                                                                                                                                                      |
|-----|--------------------|--------------------------------------------------------|-----------------------------|---------------------------------------|-------------------------------------|--------------------------|----------------------------------------------------------------------------------------------------------------------------------------------------------------------------------------------------------------------------------------------------------------------------------------------------------------------------------------------------------------------------------------------------------------------------------------------------------------------------------------------------------------------------|
|     |                    |                                                        | 성명<br>(한자명,<br>성별,<br>출생연도) | 진실규명<br>대상자와의<br>관계<br>·<br>당시<br>거주지 | 진술일<br>진술장소<br>·<br>진술형태            | 목적<br>·<br>전문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민군 점령기에 인민군 쪽에서 김○규에게 감투를 씌웠고, 그 때문에 군인에게 붙잡혀 가서 계산리 화장터(현 상주시민운동장) 부근에서 총살되었음.</li> <li>•김○규의 시신은 수습되었고, 산소는 부원리 소재 우리 집 산에 있음.</li> <li>•사람들은 김○규에게 죄가 있다면 피난 안 간 게 죄라고 안타까워했음.</li> </ul>                                                                                                                                                                                                                                                                                      |
| 예천군 |                    |                                                        |                             |                                       |                                     |                          |                                                                                                                                                                                                                                                                                                                                                                                                                                                                                                                            |
| 용궁면 |                    |                                                        |                             |                                       |                                     |                          |                                                                                                                                                                                                                                                                                                                                                                                                                                                                                                                            |
| 6   | 300-1              | 박○대<br>(朴○大)                                           | 박○○<br>(朴○○,<br>여,<br>1936) | 조카<br>·<br>예천군<br>용궁면<br>월오리          | 2023. 6. 22.<br>참고인 자택<br>·<br>진술조서 | 전문<br>(어머니,<br>아버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진실규명대상자 박○대는 경북 예천군 용궁면 월오2리 '다랭이(다래마을)'의 주민으로 농사를 지었고, 결혼해서 분가했지만 가까이에서 살았음.</li> <li>•다래마을에는 어머니와 일가인 순흥 안 씨가 가장 많이 살며 이장, 구장을 지냈고, 양 씨도 많이 살았는데 박 씨는 아버지 형제뿐이었음.</li> <li>•참고인은 삼촌이 경찰에 잡혀갔다고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전해 들었고, 시신은 수습하지 못했음. 나중에 오빠 박○○이 경찰에 연행되어 산택에서 사망했을 때는 총소리를 듣고 바로 현장으로 가서 시신수습을 했지만, 삼촌 때는 그만큼 알지 못했음.</li> <li>•삼촌 사후에 숙모는 재가해서 나갔음.</li> </ul>                                                                                                                      |
| 7   | 300-1              | 박○대<br>(朴○大)                                           | 김○○<br>(金○○,<br>여,<br>70대)  | 이웃<br>·<br>경기도<br>부천시                 | 2024. 5. 14.<br>월오정미소<br>·<br>면담보고  | 전문<br>(남편,<br>친척,<br>이웃)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용궁면 월오리에서 한국전쟁 때 주민들이 희생된 사건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안○○와 참고인의 남편인 안○○ 정도 생존해 있음.</li> <li>•이 지역의 미해결 사건으로 마을에서 유일한 밀양 박 씨였던 박○대와 박○○이 희생된 사건이 있음.</li> <li>•신청인 박○봉의 부친이 안○○ 집안에서 일했기 때문에 안○○는 사건 내용을 알고 있었고, 참고인은 남편으로부터 전해 들었음.</li> </ul>                                                                                                                                                                                                                                                   |
| 8   | 300-1<br>·<br>1041 | 박○대<br>(朴○大)<br>·<br>안○목<br>(安○睦)<br>·<br>안○진<br>(安○鎭) | 안○○<br>(安○○,<br>남,<br>1941) | 이웃<br>·<br>예천군<br>용궁면<br>월오리          | 2024. 5. 17.<br>참고인 자택<br>·<br>진술조서 | 전문<br>(이웃,<br>친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고인은 예천군 용궁면 월오1리(다래이)에서 태어나고 자란 본토박이이고, 아버지가 1949년 음력 7월 28일에 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되었음.</li> <li>•1949년 다래이에서 약 30명, 월오2리에서 약 10명이 경찰에 의해 희생되었고, 한 집에 둘씩 사망한 사람은 박○대와 박○○, 안○목과 안○진, 양○○의 가족임.</li> <li>•박○대, 박○○은 농사를 짓고 마을 일을 많이 보았고, 안○목, 안○진은 기천서원 옆에 살면서 서원을 관리하고 농사를 지었음.</li> <li>•이 사람들이 무언가 잘못된 일 없이 억울하게 경찰에 의해 사망했음.</li> <li>•좌익들이 경찰을 공격해서 사망한 사건 이후 경찰들이 양민을 빨갱이, 좌익이라고 몰아 잡아가서 죽였음. 한 번에 모두 잡아가 죽인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하다 보니 피신하지 못하고 당하곤 했음.</li> </ul> |

| 연번 | 사건<br>번호<br>(2다-) | 진실규명<br>대상자<br>(한자명)              | 참고인                         |                                       |                                            |                                      | 주요 진술                                                                                                                                                                                                                                                                                                                                                                                                                                                                                                                                                                                                                                                                 |
|----|-------------------|-----------------------------------|-----------------------------|---------------------------------------|--------------------------------------------|--------------------------------------|-----------------------------------------------------------------------------------------------------------------------------------------------------------------------------------------------------------------------------------------------------------------------------------------------------------------------------------------------------------------------------------------------------------------------------------------------------------------------------------------------------------------------------------------------------------------------------------------------------------------------------------------------------------------------|
|    |                   |                                   | 성명<br>(한자명,<br>성별,<br>출생연도) | 진실규명<br>대상자와의<br>관계<br>·<br>당시<br>거주지 | 진술일<br>진술장소<br>·<br>진술형태                   | 목적<br>·<br>전문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고인은 실제 1938년생으로 당시 초등학교 이었고, 위 내용을 당시에 동네 이웃과 집안사람들에게 들어 알고 있었음.</li> </ul>                                                                                                                                                                                                                                                                                                                                                                                                                                                                                                                                                   |
| 9  | 1041              | 안○목<br>(安○睦)<br>·<br>안○진<br>(安○鎭) | 안○○<br>(安○○,<br>남,<br>1940) | 이웃<br>·<br>예천군<br>용궁면<br>월오리          | 2024. 5. 14.<br>참고인 안○○<br>자택<br>·<br>진술조서 | 목적<br>(시신)<br>·<br>전문<br>(친척,<br>이웃)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고인은 실제 1939년생으로 당시 초등학교 이었음.</li> <li>예천군 용궁면 월오리는 순흥 안 씨 집성촌이었고, 참고인은 같은 집안인 안○목의 아들 안○진의 집에 들러 뒤로 난 길로 등교했음.</li> <li>좌우 갈등이 많을 때였는데, 등갓길에 안○진의 집에 들렀더니 마당에 가마니로 덮인 시신이 있고, 온 가족이 울고 있었음.</li> <li>안○목은 1949년 3월 1일 오전 자택에서 소먹일 여물을 준비하다 경찰에 의해 희생되었고, 안○진은 경찰이 총을 쏘는 소리를 듣고 다락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의해 끌려 나와 예천경찰서로 연행되던 중 방터(현 입암리) 개울가에서 경찰에 의해 희생되었다고 들었음.</li> <li>안○목은 좌익들에게 밥을 준 적이 있고, 안○진은 만세를 불러 시끄럽다는 이유로 법적인 절차 없이 경찰이 총을 쏘아 죽였다고 들었음.</li> <li>안○진과 이름이 같고 나이는 더 많은 ○○할배 안○○(安○○)도 돌아가셨음.</li> <li>1956년에 만든 순흥안씨족보에는 안○목과 안○진이 기축(己丑, 1949년) 3월 1일에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음. 안○진은 미혼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이후에 나온 족보에는 빠져 있다고 함.</li> </ul> |
| 10 | 1041              | 안○목<br>(安○睦)<br>·<br>안○진<br>(安○鎭) | 안○○<br>(安○○,<br>남,<br>1968) | 할아버지<br>·<br>큰아버지<br>·<br>출생 전        | 2024. 5. 14.<br>참고인 안○○<br>자택<br>·<br>진술조서 | 전문<br>(아버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시에 좌우익 갈등이 있었고, 우리집은 뒤에 산이 있었는데, 산에 사람들이 있었고 밥을 내놓으라고 하여 밥을 주는 일이 있었다고 들었음.</li> <li>밥을 준 것으로 좌익에 협조했다는 오해를 받았고, 할아버지가 새벽에 소여물을 주려고 마당을 지나오다가 집에 들이닥친 경찰이 쓴 총에 맞아 사망하고, 큰아버지가 연행되는 것을 온 가족이 보았음.</li> <li>야경을 돌려 나간 둘째 큰아버지는 귀가 전이라 무사했고, 아버지는 고모를 업고 있었고, 작은아버지는 총소리를 듣고 산으로 도망갔음.</li> <li>큰아버지는 경찰에 연행된 후 총상을 입고 사망하여 동네 어른들이 시신을 수습해왔다고 함.</li> <li>할아버지와 큰아버지의 장례는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밤에 조용히 가마니에 싸서 나란히 산소를 썼다고 함.</li> <li>할아버지와 큰아버지는 1949년 3월 1일에 사망했다고 족보에 기록되어 있고, 할아버지 사후 1949년 음력 5월에 막내 작은아버지 안○○이 태어났음.</li> <li>참고인은 이상의 내용을 목격자인 아버지(안○진)로부터 전해 들었음.</li> </ul>                                                     |

| 연번  | 사건<br>번호<br>(2다-) | 진실규명<br>대상자<br>(한자명) | 참고인                           |                                       |                                      |               | 주요 진술                                                                                                                                                                                                                                                                                                                                                                                                                                                                                                                                                                                                                                                                                                                  |
|-----|-------------------|----------------------|-------------------------------|---------------------------------------|--------------------------------------|---------------|------------------------------------------------------------------------------------------------------------------------------------------------------------------------------------------------------------------------------------------------------------------------------------------------------------------------------------------------------------------------------------------------------------------------------------------------------------------------------------------------------------------------------------------------------------------------------------------------------------------------------------------------------------------------------------------------------------------------|
|     |                   |                      | 성명<br>(한자명,<br>성별,<br>출생연도)   | 진실규명<br>대상자와의<br>관계<br>·<br>당시<br>거주지 | 진술일<br>진술장소<br>·<br>진술형태             | 목적<br>·<br>전문 |                                                                                                                                                                                                                                                                                                                                                                                                                                                                                                                                                                                                                                                                                                                        |
| 개포면 |                   |                      |                               |                                       |                                      |               |                                                                                                                                                                                                                                                                                                                                                                                                                                                                                                                                                                                                                                                                                                                        |
| 11  | 7864              | 박○성<br>(朴○成)         | 박○○○<br>(朴○○○,<br>여,<br>1942) | 딸<br>·<br>개포면<br>금동<br>(현 개포면<br>금리)  | 2024. 5. 17.<br>서중리 경로당<br>·<br>진술조서 | 목적<br>(시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아버지의 다른 이름은 ‘박○구’임.</li><li>●아버지는 해방 전에 일본에서 큰 공장을 경영하다가 해방 후 어머니의 병 치료를 위해 직골로 돌아와 반머슴을 두고 농사를 지었고, 딸만 있는 집이라 양자(참고인의 오빠, 신청인의 아버지인 박○○)를 들었음.</li><li>●1949년 7월 12일, 아버지가 목화밭에 일하러 갔는데 밥때가 되어도 오지 않아 가보았더니 눈을 뜨고 쓰러져 누워 계셨음.</li><li>●아버지를 데리러 온 내가 집에 오지 않으니 할머니가 밭으로 와서 그 모습을 보았고, 입에 물을 물고 와서 아버지 입에 넣어줬는데 아무 반응이 없고, “억울하지만 눈을 감아라, 눈을 감아라.” 하면서 손으로 눈꺼풀을 쓸어내려 눈을 감겨주었음.</li><li>●뒤의 옆집의 살며 아버지와 의형제를 맺은 ‘○○어른’(한○○과 한○○의 아버지)이라는 분도 같이 돌아가셨음.</li><li>●오빠와 집안사람들이 아버지의 시신을 모셔와 산소를 썼는데, 장례식에 대한 기억은 없음.</li><li>●밭에 있는 뽕나무에 총알이 박힌 것을 볼 때마다 아버지 생각이 나서 울곤 했음.</li><li>●사람들이 “박○구 씨는 참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는 것을 할머니, 언니와 함께 들었고, 언니는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고 복수하겠다고 다니곤 했음.</li></ul> |
| 12  | 7864              | 박○성<br>(朴○成)         | 박○○<br>(朴○○,<br>남,<br>1938)   | 조카<br>·<br>개포면<br>금동<br>(현 개포면<br>금리) | 2024. 5. 17.<br>금동 마을회관<br>·<br>진술조서 | 전문<br>(할머니)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큰아버지는 해방 전에 일본에서 살다가 해방 후 귀향해서 농사를 지었음.</li><li>●큰아버지는 1949년 7월에 밭매러 나갔다가 경찰과 경찰 앞잡이 김○○(또는 김○○)에게 택호가 ‘○○어른’이라는 분과 함께 총살되었다고 들었는데, 잘못된 일 없이 오해받아 희생되었다고 알고 있음.</li><li>●시신은 수습되어 함양박씨 문중 산에 산소를 썼고, 제사는 종질(진실규명대상자의 손자)이 모시고 있음.</li><li>●경찰 앞잡이를 했던 사람은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충북으로 이주해서 살다가 죽었음.</li><li>●참고인은 사건 내용을 할머니(진실규명대상자의 어머니)로부터 전해 들었음.</li></ul>                                                                                                                                                                                                                                                                                                                            |
| 13  | 7864              | 박○성<br>(朴○成)         | 박○○<br>(朴○○,<br>남,<br>1942)   | 이웃<br>·<br>개포면<br>금동<br>(현 개포면<br>금리) | 2023. 7. 6.<br>참고인 자택<br>·<br>진술조서   | 전문<br>(이웃)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참고인은 실제 1941년생임.</li><li>●진실규명대상자 박○성은 예천 개포면 금동의 주인으로 농사를 지었음.</li><li>●1949년 7월, 남로당 예천 책임자 정○○ 등 16명이 사망하였는데, 같이 활동하다가 나온 사람이 고자질하여 죽게 됐다는 기사가 있음. 동네 뒷산에서 그런 일이 있어도 동네 사람은 관여하지 않았고, 박○○, 한○○ 같은 거물급도 독립운동을 하느라 관여하지 않았음.</li></ul>                                                                                                                                                                                                                                                                                                                                                                                                                                         |

| 연번 | 사건<br>번호<br>(2다-) | 진실규명<br>대상자<br>(한자명) | 참고인                         |                                       |                          |               | 주요 진술                                                                                                                                                                                                                                                                                                                                                                                                                                               |
|----|-------------------|----------------------|-----------------------------|---------------------------------------|--------------------------|---------------|-----------------------------------------------------------------------------------------------------------------------------------------------------------------------------------------------------------------------------------------------------------------------------------------------------------------------------------------------------------------------------------------------------------------------------------------------------|
|    |                   |                      | 성명<br>(한자명,<br>성별,<br>출생연도) | 진실규명<br>대상자와의<br>관계<br>·<br>당시<br>거주지 | 진술일<br>진술장소<br>·<br>진술형태 | 목적<br>·<br>전문 |                                                                                                                                                                                                                                                                                                                                                                                                                                                     |
|    |                   |                      |                             |                                       |                          |               | <div>●시골 외딴집에서 밤에 빨강이 모임을 한다고<br/>집은 뜯어버렸는데, 근처에 어떤 아지트가 있<br/>다고 하여 왔던 경찰이 아침에 발매려 나온<br/>박○성을 그 자리에서 총살한 것임. 시신은 수<br/>습되었음.</div> <div>●(양민피살자신고서 작성 경위) 1960년 양민피<br/>학살신고서는 예천군수가 직권으로 조사한 것<br/>이고, 면·리로 내려보내 수행하여 면장이나 이<br/>장이 보증을 선 것이며, 신고자가 글을 모르면<br/>신고를 못 하니 공무원들이 대필한 것임. 이장<br/>이 10년 전 일을 직접 겪어 아는 사람이다 보<br/>니 신고서를 가지고 우리 집 마루까지 들어와<br/>신고서를 써서 내자고 하였음. 예천군 183건<br/>중 대부분이 대필이며, 면 도장을 찍고 날짜도<br/>적혀있는바, 국가가 나서서 받은 것임.</div> |

〈붙임(표) 3〉 제4대 국회 「 민피 자신고 」 정리표

| 연번  | 피살 당시               |                     |     |     |    |               |                  |                     | 피살경위  | 유족대표                                                               |                     |    |     |    |        |
|-----|---------------------|---------------------|-----|-----|----|---------------|------------------|---------------------|-------|--------------------------------------------------------------------|---------------------|----|-----|----|--------|
|     | 본적                  | 주소                  | 직업  | 성명  | 성별 | 생년월일          | 피살 연월일           | 피살 장소               |       | 본적                                                                 | 직업                  | 성명 | 성별  | 나이 | 관계     |
| 상주시 |                     |                     |     |     |    |               |                  |                     |       |                                                                    |                     |    |     |    |        |
| 1   | 경북 상주군 상주읍 죽전리 543  | 경북 상주군 상주읍 죽전리 543  | 무응답 | 김○규 | 남  | 1921. 12. 23. | 1950. 8. 23. (음) | 상주군 상주읍 계산2구 뒷산     | 경찰 관계 | 1950년 6월 25일 사변 이후 일반민 피난명령 당시 미피난 중 잔류하여 부락인민위원회 위원장직으로서 경찰에 피살됨. | 경북 상주군 상주읍 죽전리 543  | 학생 | 김○태 | 남  | 13 장남  |
| 예천군 |                     |                     |     |     |    |               |                  |                     |       |                                                                    |                     |    |     |    |        |
| 1   | 경북 예천군 용궁면 월오동 1104 | 경북 예천군 용궁면 월오동 1104 | 농업  | 박○대 | 남  | 1922. 1. 3.   | 1949. 8. 25.     | 경북 예천군 예천면 청북리      | 경찰 관계 | 경찰에 의하여 연행되어 피살됨.                                                  | 경북 예천군 용궁면 월오동 1104 | 농업 | 박○○ | 남  | 55 형   |
| 2   | 경북 예천군 용궁면 월오리 1151 | 경북 예천군 용궁면 월오리 1151 | 농업  | 안○목 | 남  | 1892. 3. 3.   | 1948. 3. 1.      | 경북 예천군 용궁면 나산리      | 경찰 관계 | 적색분자의 침소 또는 양식을 제공하였다 하여 자가에서 경찰에 총살당함.                            | 경북 예천군 용궁면 월오리 1151 | 농업 | 안○○ | 남  | 21 자   |
| 3   | 경북 예천군 용궁면 월오리 1151 | 경북 예천군 용궁면 월오리 1151 | 농업  | 안○진 | 남  | 1930. 5. 3.   | 1949. 3. 1.      | 경북 예천군 용궁면 나산리      | 경찰 관계 | 공산주의 사상이 있다고 연행 중 나산 동리 앞에서 총살                                     | 경북 예천군 용궁면 월오리 1151 | 농업 | 안○○ | 남  | 21 제   |
| 4   | 경북 예천군 개포면 금동       | 경북 예천군 개포면 금동       | 농업  | 박○구 | 남  | 1907. 4. 15.  | 1949. 7. 13.     | 예천군 개포면 금동 (후곡, 방기) | 경찰 관계 | 당시 본 면 지서주임 김○○, 특공대 대장 김○○, 본 면 지서 차석 강○○ 3인이 당자를 총살함             | 경북 예천군 개포면 금동       | 농업 | 박○○ | 남  | 42 양장남 |

### 〈붙임(표) 4〉 희생 현장 위치 및 사진

#### 경북 상주시

##### □ 내서면 낙서리

- 위치: 경북 상주시 내서면 낙서리 385번지 일대
  - 조사 일자: 2023. 9. 23.(토)
  - 진실규명대상자: 김○기·전○옥(2다-2724)
  - 조사 참여자: 2다-2724 신청인 김○분, 참고인 김○○
- \* 현재 묘소를 돌보는 유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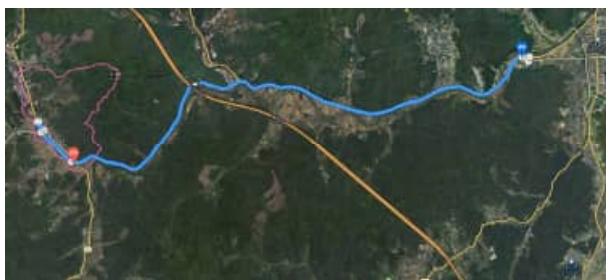
##### ○ 사건 발생 경과



- 당시 내서면 연월리(현 연월동) 785번지의 집이 있던 터
- 현재는 785-1번지와 785-2번지가 존재하며, 해당 지번에 주유소가 들어서 있고, 일부는 공터로 남아있다.



- 집이 있던 자리는 큰 도로에 접해 있고, 참고인 김○○의 집은 길 건너편이다.
- 이곳에서 진실규명대상자 김○기, 전○옥이 군인에 의해 연행되어 국방색 트럭에 타는 모습을 신청인 김○분과 참고인 김○○가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 연행 후 이동 추정 경로
- 연행장소에서 희생 장소까지의 거리는 약 15km이다.



- 참고인 김○○이 희생 장소를 가리키고 있다.
- 공간을 파악하는 기준이었던 도로변 동구나무는 정리되어 없어졌다고 한다.
- 큰 지형지물인 산은 옛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



- 희생 장소로 지목된 내서면 낙서리 385번지 일대는 도로보다 지대가 낮고, 현재 농경지(논)로 이용되고 있다.



- 매장 장소는 희생 장소에서 동북 방향으로 직선거리 기준 약 200미터 떨어진 산 입구이다.
- 경도 28.031178, 위도 36.398896



- 진실규명대상자의 산소 앞에 있는 신청인과 참고인
- 우측 상방에 희생 장소 일대가 보인다.

## 경북 상주시

### □ 계산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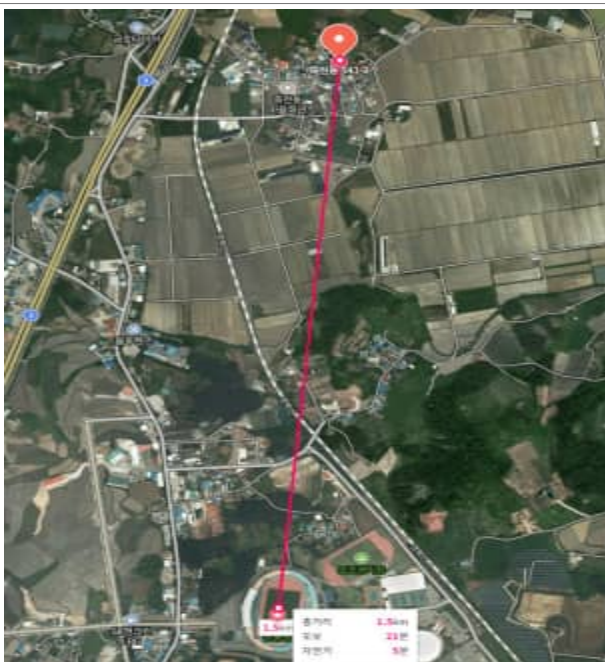
- 위치: 경북 상주시 계산동 옛 화장터 일대
- 조사 일자: 2024. 5. 27.(월)
- 진실규명대상자: 김○규(2다-16643)



- 진실규명대상자 김○규의 집



- 김○규의 집 앞 감나무와 골목
- 참고인 김○○는 진실규명대상자가 서너 명과 함께 감나무 아래를 지나 골목을 나서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에 따르면, 진실규명대상자 김○규의 희생 장소는 계산리 옛 화장장 부근이다.
- 현재는 상주시민운동장이 들어서 있다.
- 김○규의 집에서 희생 장소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1.5km이다.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27년 상주지역 지도(국토지리정보원)</li> <li>○ 하얀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상주 화장장 자리이다.</li> </ul> <p>※ 상주역사공간연구소 김상호 제공</p>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70년 상주지역 항공 사진</li> <li>○ 하얀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상주 화장장 자리이다.</li> </ul> <p>※ 상주역사공간연구소 김상호 제공</p>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8년 상주지역 항공 사진</li> <li>○ 화장장 부지를 포함하여 상주시민운동장이 들어섰는데, 이전의 지도와 지형지물을 비교하여 주변 하얀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상주 화장장 자리이다.</li> </ul> <p>※ 상주역사공간연구소 김상호 제공</p>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의 상주지역 항공 사진</li> <li>○ 하얀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옛 화장장 자리이며, 계산동 482-2번지로 확인된다.</li> </ul>                                                              |

## 경북 예천군

### □ 용궁면 월오리

- 위치: 경북 예천군 용궁면 월오리 245~246번지 일대
- 조사 일자: 2024. 5. 14.(화)
- 진실규명대상자: 안○목·안○진(2다-1014)
- 조사 참여자: 2다-1014 신청인 안○진, 참고인 안○○·안○○

### ○ 사건 발생 경과



- 진실규명대상자 안○목과 안○진은 좌측 상방의 기천서원(경북 예천군 용궁면 월오리 245) 옆 월오리 246번지에 거주하였다.
- 주변은 농지이고, 산 아래까지 이어진 진입로가 끝나는 지점에 진실규명대상자의 집이 있었다.
- 아래쪽에 표시된 집은 참고인 안○○의 집이다.



- 기천서원의 상절사(尙節祠), 헌성비(獻誠碑)
- 기천서원 뒤쪽으로 산이 있다.



- 기천서원 명교당(明敎堂)과 부속건물 사잇길로 가면 옛 집터가 나온다.



- 신청인 안○진이 옛 집터가 복숭아밭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 여기에 있던 집에서 신청인은 진실규명대상자 안○목이 경찰에게 총살되고, 진실규명대상자 안○진은 연행되는 것을 목격했다.



- 참고인 안○○가 집 옆에 난 산길로 안○진과 학교에 다녔다고 설명하고 있다.
- 참고인은 학교에 가기 위해 들렀다가 진실규명대상자 안○목과 안○진의 시신이 수습되었고 가족들이 우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 경북 예천군

### □ 개포면 금리

- 위치: 경북 예천군 개포면 금리 178번지 및 방기터 밭
- 조사 일자: 2024. 5. 17.(금)
- 진실규명대상자: 박○성(2다-7864)
- 조사 참여자: 2다-7864 신청인 박○호

### ○ 사건 발생 경과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골목 초입에 진실규명대상자의 집(오른쪽 초록 대문집)이 참고인 박○○의 집(왼쪽)이 마주 보고 있다.</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실규명대상자가 희생되어 시신을 수습했다는 목화밭은 집에서 직선거리로 약 700미터, 도보로 10분~15분 거리에 있다.</li> <li>○ 선이 연결되지 않은 별표는 참고인 박○○의 집이다.</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박○호가 진실규명대상자가 희생되어 시신이 수습된 장소를 설명하고 있다.</li> <li>○ 해당 지역은 지도에 '방기터' 또는 '방기집터'라는 지명으로 확인된다.</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밭 주변에 길이 나 있고 길 건너에 도랑이 있어 지도와 대조해볼 수 있다.</li> </ul>                                                                   |